

1. 테크노경영대학원 2025학년도 학사일정	001
2.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육목표 및 연혁	003
3. 원장 인사말	005
4. 조직도	006
5. 구성원 소개	007
6. 학과 안내	010
7. 교육과정 이수 및 학위취득 요건 안내	014
8. 학사제도 안내(등록, 수강신청, 학적변동, 논문/비논문 이수 등)	016
9. 계약학과 과정 재학생 제출서류 안내	032
10. 학생생활 안내	033
11. 테크노경영대학원 내규	037
12.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053
13.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085

[1학기 학사일정]

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학 사 일 정
3월							1	3.1(토) 삼일절
	2	3	4	5	6	7	8	3.3(월) 삼일절 대체휴일
								3.4(화) 1학기 개강
	9	10	11	12	13	14	15	3.4(화)~3.10(월)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16:00까지)
								3.4(화)~3.10(월) 예비졸업사정
	16	17	18	19	20	21	22	3.8(토) [일반석사/계약학과] 1학기 입학식 및 OT
								3.10(월)~3.22(토) 논문예비계획서 제출
								3.12(수) [중문MBA] 입학식
								3.21(금) 휴학 신청 마감
								3.10(월)~6.7(금) [중문MBA] 한국어 프로그램 수강
4월			1	2	3	4	5	4.1(화)~4.5(토) 트랙신청 및 포기
	6	7	8	9	10	11	12	4.14(월)~5.10(토) 청구논문 제출(학위논문제출승인서/심사용청구논문)
	13	14	15	16	17	18	19	4.22(화)~4.26(토) 1학기 중간시험
	20	21	22	23	24	25	26	4.28(월)~ 2025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예정)
								4.29(화)~5.5(월) 1학기 중간 강의평가
5월					1	2	3	5.5(월) 어린이날 · 부처님 오신 날
	4	5	6	7	8	9	10	5.6(화) 대체휴일
	11	12	13	14	15	16	17	5.18(일) 개교기념일(76주년)
	18	19	20	21	22	23	24	5.19(월)~5.31(토) 논문 심사 및 논문지도(심사)결과보고서 제출
	25	26	27	28	29	30	31	
6월	1	2	3	4	5	6	7	6.3(화)~6.23(월) 1학기 기말 강의평가
								6.6(금) 현충일
	8	9	10	11	12	13	14	6.17(화)~6.21(토) [일반석사/기업제휴] 1학기 기말시험
								6.17(화)~6.23(월) [중문MBA] 1학기 기말시험
	15	16	17	18	19	20	21	6.17(화)~6.30(월) 1학기 성적입력
								6.17(화)~6.30(월) 1학기 성적열람 및 공시(강의평가자, 6.28~29.제외)
								6.23(월)~7.4(금) 학위논문 제출(중앙도서관 일정)
								6.26(화)~8.29(금) [중문MBA] 전공 변경 신청
								6.24(월)~7.14(금) [중문MBA] 하계 계절학기 및 한국어 프로그램 수강
7월			1	2	3	4	5	7.1(화)~7. 3(목) 1학기 성적공시 및 정정
								7.1(화)~7.18(금) 재학생 장학 신청
	6	7	8	9	10	11	12	7.7(월) 1학기 성적 이관
								7.7(월)~7.12(토) 2학기 전과 신청
	13	14	15	16	17	18	19	7.14(월)~7.26(토) 2학기 복학 신청
								7.15(화)~7.18(금) [중문MBA] 하계 계절학기 성적입력, 열람 및 정정
								7.21(월) [중문MBA] 하계 계절학기 성적이관
								7.22(화)~7.25(금) [중문MBA] 2024학년도 후기 졸업사정
								7.28(월)~8.1(금) 하계 집중휴무(Eco-Friendly Campus Week)
8월						1	2	8.4(월)~8.16(토) 2학기 휴학 신청
								8.11(월)~8.18(월) 2학기 등록(본인부담금)
	3	4	5	6	7	8	9	8.15(금) 광복절
								8.19(화)~8.25(월) [중문MBA] 18기 수강신청
	10	11	12	13	14	15	16	8.20(수)~8.25(월) [중문MBA] 19기 수강신청
								8.21(목)~8.25(월) [중문MBA] 20기 수강신청
							8.20(수) [중문MBA] 2025학년도 후기 신입생 OT	
								8.20(수)~8.26(화) 2학기 등록(계약학과: 산업체부담금)
								8.20(수)~8.26(화) 2학기 수강 신청
								8.23(토)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학기 학사일정]

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학 사 일 정
9월		1	2	3	4	5	6	9.1(월) 2학기 개강 [중문MBA] 9.1(월)~9.5(금) 예비졸업사정
	7	8	9	10	11	12	13	9.2(화) 2학기 개강 [일반석사/기업제휴]
	14	15	16	17	18	19	20	9.2(화)~9.8(월) 수강 신청 확인 및 정정
	21	22	23	24	25	26	27	9.6(토) [일반석사/계약학과] 2학기 입학식 및 OT 9.15(월)~9.27(토) 논문예비계획서 제출
	28	29	30					9.21(토) 휴학 신청 마감 9.8(월)~12.6(금) [중문MBA] 한국어 프로그램 수강
10월				1	2	3	4	10.3(금) 개천절
	5	6	7	8	9	10	11	10.5(일)~10.7(화) 추석연휴
	12	13	14	15	16	17	18	10.8(수) 대체휴일
	19	20	21	22	23	24	25	10.9(목) 한글날
	26	27	28	29	30	31		10.13(월)~10.18(토) 트랙신청 및 포기 10.13(월)~11.8(토) 청구논문접수(학위논문제출승인서/심사용청구논문)
								10.21(화)~10.25(토) [일반석사/기업제휴] 2학기 중간시험 10.20(월)~10.24(금) [중문MBA] 2학기 중간시험 10.27(월)~10.31(금) 2학기 중간 강의평가 10.27(월)~ 2026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모집(예정)
11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1.17(월)~11.29(토) 논문심사 및 논문지도(심사)결과보고서 제출
	23	24	25	26	27	28	29	
	30							
12월		1	2	3	4	5	6	12.1(월)~12.19(금) 2학기 기말 강의평가 12.15(월)~12.19(금) [중문MBA] 2학기 기말시험
	7	8	9	10	11	12	13	12.15(월)~12.17(수) [중문MBA] 전공변경신청
	14	15	16	17	18	19	20	12.16(화)~12.20(토) [일반석사/기업제휴] 2학기 기말시험
	21	22	23	24	25	26	27	12.16(화)~12.29(월) 2학기 성적입력
	28	29	30	31				12.16(화)~12.29(월) 2학기 성적열람 및 공시(강의평가자, 12.27~28제외)
								12.22(월)~2026.1.2(금) 학위논문 제출(중앙도서관 일정) 12.22(월)~2026.1.13(화) [중문MBA] 동계 계절학기 및 한국어 프로그램 수강 12.25(목) 성탄절 12.30(화)~2026.1.2.(금) 2학기 성적공시 및 정정
2026 년 1월				1	2	3		1.1(목) 신청
	4	5	6	7	8	9	10	1.2(금)~1.16(금) 재학생 장학 신청
	11	12	13	14	15	16	17	1.5(월) 2학기 성적 이관
	18	19	20	21	22	23	24	1.5(월)~1.9(금) [일반석사·기업제휴] 2025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25	26	27	28	29	30	31	1.5(월)~1.10(토) 2026년도 1학기 전과신청
								1.12(월)~1.24(토) 2026년도 1학기 복학신청 1.14(수)~1.16(금) [중문MBA] 동계 계절학기 성적입력, 열람 및 정정 1.19(월) [중문MBA] 동계 계절학기 성적 이관 1.22(수)~1.23(금) [중문MBA] 2025학년도 전기 졸업 사정 1.26(월)~1.30(금) 동계 집중 휴무(Eco-Friendly Campus Week)
2월	1	2	3	4	5	6	7	2.2(월)~2.14(토)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8	9	10	11	12	13	14	2.9(월)~2.13(금) 2026학년도 1학기 등록(본인부담금)
	15	16	17	18	19	20	21	2.10(화) [중문MBA] 2026학년도 전기 신입생 OT 설 연휴
	22	23	24	25	26	27	28	2.16(월)~2.18(수) 2.19(목)~2.24(화)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계약학과·산업체부담금)
								2.19(목)~2.24(화) 2026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2.18(수)~2.26(수) [중문MBA] 19기 수강 신청 2.19(목)~2.26(월) [중문MBA] 20기 수강 신청 2.20(금)~2.26(수) [중문MBA] 21기 수강 신청 2.28(토) 2025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 학사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육목표 및 연혁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은 1987년에 설립하여 대학이념인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창학정신을 바탕으로 선도기관으로서의 차별화된 교육환경과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커리큘럼,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문화, 복지, 사회, 건설의 MBA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목표

글로벌 혁신의 K-산학협력 허브로서, 디지털 전환시대를 선도하는 도전적 DNA를 갖춘 혁신기업가 양성을 목표로 함

■ 연혁

연대	연월	주요내용
2010년 이후	2025.01.	제13대 원장 정원석 교수 취임
	2023.09.	반도체융합학과 신설
	2023.09.	글로벌경영학과(MBA) 신설
	2023.03.	ESG경영 최고전문가 과정 신설
	2023.03.	디지털융합학과 신설
	2022.07.	제12대 원장 홍충선 교수 취임
	2021.09.	AI기술경영학과 신설
	2021.03.	미래혁신경영학과 신설
	2020.03.	스마트기술경영학과 신설
	2019.09.	복지서비스학과 신설
	2019.03.	복지경영학과 신설
	2018.02.	제11대 원장 신상협 교수 취임
	2016.03.	중문MBA과정 국내대학 최초 신설
	2015.01.	제10대 원장 김선국 교수 취임
	2013.09.	계약학과(기업제휴 MBA)과정 신설
	2013.05.	제9대 원장 이용택 교수 취임
	2013.03.	녹색건설산업최고위과정을 녹색융합산업최고위과정으로 개칭
2011.09.	녹색건설산업최고위과정 신설	
2010.03.	글로벌교육경영자과정 신설	

연대	연월	주요내용
2000년대	2007. 12.	제8대 원장 박찬욱 교수 취임
	2006. 02.	제3군사령부 오프캠퍼스 신설
	2004. 12.	제7대 원장 강정모 교수 취임
	2004. 01.	테크노경영대학원으로 개명
	2003. 09.	글로벌경영학과 MBA과정 설치
	2003. 01.	제6대 원장 김한원 교수 취임
	2002. 09.	경영정보학부에 MBA 과정 설치(정원 20명)
	2001. 08.	학칙변경인가(9개학과 16개 전공 정원 108명)/사회복지학과 행정대학원으로 이관
	2001. 03.	제5대 원장 송영재 교수 취임
	2000. 10.	환경공학과 신설
1990년대	1999. 12.	고급정보관리자(CIO)단기특별과정 신설
	1999. 08.	전문관리자과정의 세부과정명을 세부전공으로 변경하고, 세부전공으로서 골프산업경영전공 신설
	1999. 02.	학칙변경인가(정보자원관리전공 신설) (1개 전공 신설 114명 정원, 11개 학과 22개 전공으로 편제 조정)
	1998. 09.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을 위한 특별과정 및 경매 컨설턴트 특별과정 개설
		최고경영자과정을 전문관리자과정으로 개칭 전문관리자과정 4개 세부과정 (경영관리전공, 지방자치행정전공, 최고정보관리전공, 부동산관리전공) 신설
	1998. 06.	대학원발전위원회 구성
	1997. 11.	학칙변경인가 1개학과 신설(토목공학과) 139명 정원
		학과명칭변경(화학공학과 → 신소재공학과)
	1997. 10.	지역개발행정학과내에 사회복지전공 신설, 산업디자인학과 전공분리 (시각디자인·공업디자인전공)
	1997. 03.	창업실습강좌 개설(경기도 지원)
	1997. 03.	제4대 원장 이계탁 교수 취임
	1997. 03.	중소기업창업실습 강좌 개설
	1996. 10.	학칙변경인가(30명 증원 및 입학정원제 실시 129명, 학과 명칭 변경 : 회계정보학과, 회계학과)
	1995. 10.	학칙변경인가 3개학과 신설(전파방송, 산업디자인, 스포츠외교) 246명 정원
	1994. 12.	학칙변경인가 3개학과 신설(중소기업, 세무, 자동차공) 246명 정원
	1993. 02.	제3대 원장 김용래 교수 취임
	1992. 03.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설치
1991. 12.	학칙변경인가 2개학과 신설(회계정보, 화학공) 186명 정원	
1990. 12.	학칙변경인가 2개학과 신설(무역정보, 산업공) 151명 정원	
1990. 03.	제2대 원장 이대영 교수 취임	
1980년대	1988. 12.	학칙변경인가 3개학과 신설(경영정보, 제어계측, 정보통신) 125명 정원
	1988. 03.	초대원장 우제린 교수 취임
	1987. 10.	산업정보대학원 신설 5개 학과(기계공, 전자공, 식품가공, 전자계산, 지역개발행정) 80명 정원

3 원장 인사말

현재 전 세계는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Twin Transition이 진행하고 있어 여러 산업 분야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핵심·신흥기술(Critical & Emerging Technology)과 융합 학문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의 시대 상황에서, 우리 대학이 보유한 고유가치인 세계시민의 의무와 책임, 민주적 사고, 사회적 공헌은 세계인의 일원으로 후대에 지구를 보전해야 할 현시대의 지성인으로서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경희대학교 창학이념인 '문화세계의 창조' 구현의 기치를 근간으로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거교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본 대학원은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전략을 실행하는 주체가 될 사회 지도층(social leader) 양성을 위한 선도 교육기관(Advanced Educational Institute)으로서 차별화된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의 여러분의 노력과 연구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경희의 발전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인재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차별화되고 수월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국내외 저명인사와 학자를 교수진으로 구성하고,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커리큘럼, ICT 기반 교육 시설과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의 모든 교수, 직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참여하는 경희 테크노경영대학원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본 대학원은 지식의 場, 정보교환의 場, 경영혁신의 場, 사회발전의 場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개교 이래로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과 경영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융합기술경영으로 발전시키고,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드높일 연구와 교육의 전당이 되도록 발전시키는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경희대학교의 가족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들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함은 물론 다가올 미래 사회를 이끌 리더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문화세계의 창조' 구현과 미래 전략 달성의 주역으로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국제 수준의 연구와 교육 환경조성에 매진하고 있는 경희 가족 모두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원장

4 조직도



5 구성원 소개

■ 원장

정 원 석 교수	wschung@khu.ac.kr
전공 및 연구분야	토목공학(구조공학)
학 위	Purdue University
연락처	031-201-2130
연구실	멀티미디어교육관 710호

■ 부대학원장

신 정 우 교수	shinjung11@khu.ac.kr
전공 및 연구분야	기술예측및평가, 기술가치평가
학 위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연락처	031-201-3687
연구실	공학관 425호

■ 글로벌경영학과(계약학과)/AI기술경영학과 학과장

홍 아 름 교수	arhong@khu.ac.kr
전공 및 연구분야	기술경영, 기술정책, 융합산업정책
학 위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연락처	031-201-2145
연구실	멀티미디어교육관 711-2호

■ 글로벌경영학과 학과장

류 두 원 교수	lyucreon@khu.ac.kr
전공 및 연구분야	재무금융,기업재무,ESG,제품시장경쟁,국제경영
학 위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연락처	031-201-2195
연구실	멀티미디어교육관 822호

■ 스포츠경영학과/글로벌경영학과(MBA) 학과장

김태형 교수	thkim1@khu.ac.kr
전공 및 연구분야	스포츠산업, 스포츠경영
학 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
연락처	031-201-3467
연구실	멀티미디어교육관 824호

■ 건설안전경영학과/건설안전보건학과 학과장

김만기 교수	kmkivs@gmail.com
전공 및 연구분야	건설관리, 시공, 건설안전경영
학 위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
연락처	031-201-2131
연구실	멀티미디어교육관 710호

■ 심리상담경영학과/스마트기술경영학과 학과장

조용석 교수	ican345@khu.ac.kr
전공 및 연구분야	인간관계,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학 위	경희대학교 행정학 박사
연락처	031-201-2192
연구실	멀티미디어교육관 808호

■ 디지털융합학과/미래혁신경영학과 학과장

강선무 교수	etxkang@khu.ac.kr
전공 및 연구분야	통신프로토콜, 컴퓨터, 네트워크, AI, 기술기획
학 위	충남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연락처	031-201-5391
연구실	애지원 404호

■ ■ 반도체융합학과 학과장

홍 상 훈 교수	daniel@khu.ac.kr
전공 및 연구분야	반도체 설계, 임베디드시스템 설계
학 위	하바드대학 공학박사
연락처	031-201-3811
연구실	전자정보대학 407호

■ ■ 행정실

행 정 실	khwb7000@khu.ac.kr
연락처	031 - 201 - 2130~2
팩 스	031-201-2777
위 치	멀티미디어교육관 708호

6 학과 안내

과정	학과	전공	트랙명	학위명
일반석사	글로벌경영	글로벌경영	마케팅 인사조직 세무경영 기술경영 문화예술경영	경영학석사
	스포츠경영	스포츠경영	스포츠정책	체육학석사
	건설안전경영	건설안전경영	-	공학석사
	심리상담경영	심리상담경영	-	경영학석사
	디지털융합	디지털융합	-	공학석사
계약학과 (기업제휴MBA)과정	건설안전보건	건설안전보건	-	공학석사
	글로벌경영	글로벌경영	마케팅 인사조직 세무경영 기술경영 문화예술경영	경영학석사
	글로벌경영(MBA)	글로벌경영	-	경영학석사
	스마트기술경영	스마트기술경영	-	경영학석사
	미래혁신경영	미래혁신경영	-	경영학석사
	SI기술경영	SI기술경영	-	경영학석사
	반도체융합	반도체융합	-	공학석사

일반석사과정

■ 글로벌경영학과

- 미래 사회의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학제적이며 융합 교육과 연구를 가능하게 구축
- 경영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글로벌경영학과의 융합된 전공하에 실무적인 우수함을 겸비한 MBA 전문인력을 양성
-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글로벌경영인을 양성하여 지역 산학협력 맞춤형 전문인 육성에 시너지를 달성
- 트랙과정 : 마케팅, 인사조직, 세무경영, 기술경영, 문화예술경영 트랙을 운영

■ 스포츠경영학과

- 스포츠경영학과는 최근 현대사회에 있어 스포츠산업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스포츠경영 전문가의 능력과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고, 특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조정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스포츠로 연결시키는 기획력을 배양하는 스포츠산업/경영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학과 교육목표를 두고 있음
- 따라서 스포츠산업 현장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스포츠산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이론과 실무에서 스포츠경영이라는 학문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한국최고의 스포츠산업경영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음

■ 건설안전경영학과

- 건설분야의 안전전문가(Professional Safety Expert) 양성을 위해 이론에서부터 현업 중심의 체계적이며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학과임
- 다양한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선진화된 건설산업은 대형화, 복잡화되어 건설 재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최근 안전의 중요성이 사회적 이슈화됨에 따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따라 건설사업의 안전경영을 목표로 기존 건설사업관리에 안전관리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의 도입과 이를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안전분야 전문가가 필요함.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AI, AR, VR, BIM, Mechatronics, Big Data, Deep Learning 등의 새로운 기술들을 안전분야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기술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병행하여 선도기술 지식확보와 현업 안전분야에 활용을 모색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본 학과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발굴하고 분석, 평가, 통제, 관리에서 부터 건설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통합안전관리 능력을 배양을 목표로 함
- 전공과목을 공통필수 과목과 현업 업무수행이 가능한 전공과목을 세분화하여 전문분야별 직무교육의 효과가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실시하여 국내 건설안전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심리상담경영학과

- 미래 사회의 사회복지경영환경에 필요한 융합 교육과 연구를 가능하게 구축
- 경영전문지식을 기반으로 복지서비스와 융합된 실무전문인력을 양성
- 지역산학협력 맞춤형 전문인을 육성

■ 디지털융합학과

-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인 디지털융합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 첨단 미래기술 기반의 학과 신설로 테크 분야 위주의 지역산업에 기여
- 전문가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 팀티칭 실무 교육

계약학과(기업제휴MBA과정)

- 본 대학원에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체등과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기업제휴MBA)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설치학과 : 건설안전보건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MBA), 스마트기술경영학과, 반도체융합학과

■ 건설안전보건학과

- 건설분야의 안전전문가(Professional Safety Expert) 양성을 위해 이론에서부터 현업 중심의 체계적이며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학과임
- 다양한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선진화된 건설산업은 대형화, 복잡화되어 건설 재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최근 안전의 중요성이 사회적 이슈화됨에 따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따라 건설사업의 안전경영을 목표로 기존 건설사업관리에 안전관리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의 도입과 이를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안전분야 전문가가 필요함.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AI, AR, VR, BIM, Mechatronics, Big Data, Deep Learning 등의 새로운 기술들을 안전분야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기술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병행하여 선도기술 지식 확보와 현업 안전분야에 활용을 모색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본 학과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발굴하고 분석, 평가, 통제, 관리에서 부터 건설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통합안전관리 능력을 배양을 목표로 함
- 전공과목을 공통필수 과목과 현업 업무수행이 가능한 전공과목을 세분화하여 전문분야별 직무교육의 효과가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실시하여 국내 건설안전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글로벌경영학과

- 글로벌경영학과는 미래사회의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융합 교육과 연구를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영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글로벌경영학과의 융합된 전공하에 실무적인 우수함을 겸비한 MBA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산학협력 맞춤형 전문인 육성에 시너지를 달성하고자 함
- 트랙과정 : 기술경영, 마케팅, 문화예술경영, 인사조직 트랙을 운영하고 있음

■ 글로벌경영학과(MBA)

-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과 LS그룹과의 협약에 의해 설립한 계약학과임
- LS그룹의 미래 산업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경영학 관련 교과목,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개발을 위한 교과과정 운영

■ 스마트기술경영학과

- 소재, 부품, 장비업체의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융합 교육과 연구를 가능하게 구축
- 경영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R&D프로젝트관리 MBA전문인력을 양성
- 4차산업 시대 지역 산학협력 맞춤형 전문인 육성에 부합된 교과과정 운영

■ 미래혁신경영학과

- 창조적 전문공무원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이론과 현장수업을 겸하여 공학 인문 사회학적 지식을 겸비한 융합 지식인으로 양성
- 향후 관·산·학 협력을 위한 맞춤형 전문인 육성에 시너지를 달성하고자 함

■ AI기술경영학과

- 기업의 급변하는 디지털 경영환경에서 AI 기술에 선제적 대응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목표로 함
- 기술경영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AT(AI+Transformation) 기술 기반의 전문인력을 양성
- 디지털 전환 시대의 지역사회에 특화된 산학협력 맞춤형 전문인 육성에 부합된 교과과정 운영

■ 반도체융합학과

- 설계, 소자/공정, 응용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융합기술 전문인력을 양성
- Case study 기반 Project Based Learning (PBL) 교육 등으로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인공지능 반도체 중심의 재교육 실시

7 교육과정 이수 및 학위취득 요건 안내

1. 교육과정 기본구조표

각 학과별로 아래표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세부사항은 각 학과 교육과정 참조)

구분	학과명	전공명	수료학점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석사과정	글로벌경영	글로벌경영	24	3	9	12
	스포츠경영	스포츠경영	24	3	9	12
	건설안전경영	건설안전경영	24	3	9	12
	심리상담경영	심리상담경영	24	3	9	12
	디지털융합	디지털융합	24	3	9	12
계약학과 (기업재휴MBA)과정	건설안전보건	건설안전보건	24	3	9	12
	글로벌경영	글로벌경영	24	3	9	12
	글로벌경영(MBA)	글로벌경영	24	3	9	12
	스마트기술경영	스마트기술경영	24	3	9	12
	미래혁신경영	미래혁신경영	24	3	9	12
	AI기술경영	AI기술경영	24	3	9	12
	반도체융합	반도체융합	24	3	9	12

※ 논문이수자 : 논문통과(논문1, 논문2 이수)

※ 비논문과정 : 논문대체학점 2과목(6학점) 추가이수

2. 공통필수 교과목 이수안내

- 교과목 : 경영통계, 경영학원론
- 논문과정의 경우는 경영통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공통필수 교과목은 1과목 이상 최대 2과목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3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가능함(건설안전보건학과 제외)

3. 전공교과목 이수안내

- 각 학과의 교육과정으로 지정한 전공학점(필수+선택)을 이수하여야 함
- 공통필수와 전공필수 교과목을 합하여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초과한 학점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함
- 졸업논문은 전공선택 교과목 논문1, 논문2를 이수하여야 함
- 학위취득은 논문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논문 학위과정을 신청할 수 있음

4. 트랙과정 이수

- 트랙과정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는 각 학과에서 개설하는 트랙에서 지정한 필수 교과목 9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5. 학위취득 요건

구분	요건	
수료학점	- 학위논문과정 기준 24학점 이상(각 학과의 교육과정 기본구조 충족) - 전공필수학점은 각 학과 교육과정으로 편성한 전공필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전과목 평균성적	총 평점평균 B-(2.7) 이상 취득	
최소 이수학기	4학기 (*글로벌경영학과(MBA)의 경우 3학기)	
학위논문 과정	1~4기	공통필수 교과목 “경영통계” 이수
	3기	논문예비계획서 제출(논문1 취득)
	4기	논문심사(발표), 논문제출(논문2 취득)
비논문 학위과정	논문대체과목	논문 대체과목 2과목(6학점)이수,
	졸업연구보고서	4기에 졸업연구보고서 제출

등록

1. 등록시기

- 1학기 : 2월 중
- 2학기 : 8월 중

2. 등록절차

- 재학생 : 인포21 로그인 → 등록/장학 → [등록] 등록금 부과내역에서 고지서출력
- 복학생 : 인포21 로그인 → 학적 → 복학신청(승인후) → (미등필/등필확인) → [등록] 등록금 부과내역에서 고지서 출력 → 지정은행 납부

3. 등록시 유의사항

- ① 등록금 고지서는 개별 발송하지 않으며, 경희대학교 인포21시스템에서 개인이 직접 출력
- 등록금 고지서는 납부일자 당일부터 출력가능
- ② 지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 처리됨
- ③ 장학금 수혜자(조교, 경희가족장학, 경희동문장학, 국가고시장학, 협정장학 등)는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 처리여부 확인 후 납부
- ④ 계약학과(기업제휴MBA)는 본인 부담금 납부 후 산업체 부담금 납부가 가능하오니, 납부기간 확인 필요 (반드시 본인 부담금 납부 후 산업체 부담금 납부)

4. 등록 관련 기타 안내

가.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

- ① 학생 개인별로 부여된 등록금 납부 계좌는 가상계좌로, 등록 시 온라인 입금이 가능한 계좌임
- ② 등록금액과 송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반환됨(총금액을 나눠서 입금 불가)

나. 등록금 납부 방법

- ① 등록금은 계좌입금만 가능함(카드 결제, 할부 납부 불가)
- ② 기업제휴MBA과정 학생의 경우 본인부담금 납부, 산업체부담금 납부가 별도로 있으며,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기간 및 금액 확인 후 납부(본인 부담금 납부 후에 산업체 부담금 납부 가능)

다. 학자금 대출신청 및 방법

- ① 한국장학재단사이트에 가입하여 등록한 후 순서대로 진행
- ②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학자금대출신청 → 대출승인 → 본인이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실행(계약)과 동시에 등록 → 등록완료

라. 등록금 반환

- ①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이미 납부한 입학금 또는 수업료를 반환함
 - 법적으로 입학, 편입학, 재입학이 불가능한 경우
 - 법적으로 학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 재학생이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자(등필휴학)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개인적 사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 및 학업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 입학금, 수업료를 납부액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 ② 학기 개시일 후 반환사유 발생 시 경과시일에 따라 반환액수를 달리함

경과일수	반환액
학기 개시 전	전액 반환(입학금 포함)
학기 개시일 ~ 30일	수업료의 6분의 5
학기 개시 30일 ~ 60일	수업료의 3분의 2
학기 개시 60일 ~ 90일	수업료의 2분의 1
학기 개시 90일 후	반환하지 않음

※ 신입생의 경우 학기 개시일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 휴학생에 대한 반환은 휴학일을 기준으로 함

마. 수업연한(4학기) 동안 학점을 전부 취득하지 못하여 추가로 등록할 경우

- 6학점 미만 등록 : 등록금의 1/2 납부
- 6학점 이상 등록 : 등록금 전액 납부

수강신청제도

1. 2025학년도 수강신청 일정

구분	1학기	2학기
개강일	2025.03.04.(화)	2025.09.02.(화)
수강신청	2025.02.19.(수)~2025.02.24.(월)	2025.08.20.(수)~2025.08.25.(월)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2025.03.04.(화)~2025.03.10.(월)	2025.09.02.(화)~2024.09.08.(월)

2. 수강신청

-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학생 본인이 직접 진행하여야 한다.
- 휴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전 소정기간에 복학 승인을 받아야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 수강신청 확인 기간에는 반드시 인포21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의 수강신청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학기당 수강학점

- 학기당 최대 수강학점 : 9학점(단, 글로벌경영학과(MBA)의 경우 최대 12학점)
-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 : 3학점(단, 논문1, 논문2을 수강신청 할 경우는 예외로 함)

4. 교과목 개설기준

- 수강인원 5명 이상, 분반 강좌개설은 30명 단위(단, 대학원장 허가 시 예외)

5. 수강신청방법

1) 수강신청 시스템 홈페이지 : <http://sugang.khu.ac.kr>

2) 수강신청시스템 로그인 방법 : ID-학번 / PW-경희대학교 포털(Info21) 비밀번호

※ Password 변경방법 : Info21통합로그인 → 포털 → My Page → 비밀번호변경 메뉴에서 변경가능

3) 수강신청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PC용 메뉴얼 수강신청 사용자 메뉴얼 중 종합시간표 조회 및 수강신청에 관한 내용 참조

6. 기타유의사항

- 수강신청 전 본인의 수강가능학점을 반드시 확인 한 후 수강신청 실시함
- 종합시간표를 조회한 후 수강신청을 실시함.
- 타학과(전공) 교과목 수강 시, 이수구분 상관없이 '전공선택'으로 인정됨
- 수강신청은 본인이 이수해야 하는 과목과 학점을 확인한 후 수강신청하며, 완료 후에 본인의 수강신청 과목을 「수강신청내역」에서 다시 확인한 후 로그아웃하고 종료함

7. 수강신청 FAQ

1) 한 학기 당 이수 학점은 몇 학점인가요?

- 한 학기당 최대 이수 학점은 9학점(3과목)입니다. (단, 글로벌경영학과(MBA)의 경우 최대 12학점(4과목))

2) 공통필수인 경영통계, 경영학원론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대학 : 테크노경영대학원', '학과 : 테크노경영대학원' 선택 후 조회하여 신청

- 전공 교과목은 '학과'에 각 학과(글로벌경영학과(4학기제), 스포츠경영학과, 건설안전경영학과(4학기제), 심리상담경영학과, 디지털융합학과, 건설안전보건학과, 글로벌경영학과(4학기제-계약)), 글로벌경영학과(MBA), 스마트기술경영학과(4학기제-계약), 미래혁신경영학과(4학기제-계약), AI기술경영학과(4학기제-계약), 반도체융합학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3) 제 전공에 맞는 과목을 어떤 걸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교육과정편성표 및 교육과정시행세칙을 확인하여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을 확인하여 신청
- 학과별 커리큘럼 및 전공과목 수강신청 등 문의는 담당 주임교수님과 문의
 - 글로벌경영학과(계약학과포함) : 홍아름 교수(031-201-2145, arhong@khu.ac.kr)
 - 스포츠경영학과 : 김태형 교수(031-201-3467, thkim1@khu.ac.kr)
 - 건설안전경영학과/건설안전보건학과 : 김만기 교수(kmkivs@gmail.com)
 - 심리상담경영학과 : 조용석 교수(031-201-2192, ican345@khu.ac.kr)
 - 글로벌경영학과(MBA) : 김태형 교수(031-201-3467, thkim1@khu.ac.kr)
 - 스마트기술경영학과 : 조용석 교수(031-201-2192, ican345@khu.ac.kr)
 - 미래혁신경영학과 : 홍아름 교수(031-201-2145, arhong@khu.ac.kr)
 - AI기술경영학과 : 홍아름 교수(031-201-2145, arhong@khu.ac.kr)
 - 디지털융합학과 : 강선무 교수(031-201-5391, etxkang@khu.ac.kr)
 - 반도체융합학과 : 홍상훈 교수(031-201-3811, daniel@khu.ac.kr)

4) '논문' 과목은 어떻게 수강신청 하나요?

- 논문은 1년(2학기)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이며, 논문/비논문과정 신청은 3기(5학기제의 경우 4기)가 대상자입니다.
- 3월(1학기), 9월(2학기) 중 지정기간에 논문, 비논문과정 신청 및 변경함.
- 논문 과정을 신청한 학생은 졸업학기에 '논문2' 교과목이 자동적으로 신청됩니다.
('논문2' 교과목의 경우, 논문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논문을 제출해야 Pass 처리됨)
- 논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지정기간에 비논문과정으로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변경 신청 시 지난 학기에 이수한 논문1이 삭제됩니다.

5) 폐강기준 인원은 몇 명인가요?

- 1과목 5명 미만입니다.

6) 강의실은 확정된 건가요?

- 추후 수강신청에 따라 강의실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강 전 본인의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바랍니다.

7) 타학과 개설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나요?

- 본인 소속 학과 개설 과목 이외 타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도 수강가능합니다. 2022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최대 9학점까지 전공선택으로 인정가능합니다.

8. 인포21 : 통합ID 등록

1) 주소 : <https://info21.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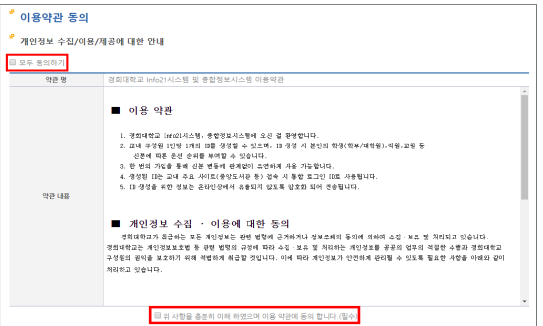
2) 로그인 방법

- ① ID : 통합ID
- ② PASSWORD : 등록한 통합 password
- ③ 용어정리

- 통합ID : 개인별로 1개의 아이디를 보유하며, 기존 여러 개의 신분 ID를 통합ID 하나로 사용
- 신분ID : 경희대학교에 등록된(기존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방식인) 학번/사번을 의미

3) 사용자 등록 방법

- ① 사용자 계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함
- ② 등록 절차

<p>1. [사용자 등록] 클릭</p> 	<p>2.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이용약관 동의</p> 
<p>3. 이용약관 동의 후 본인인증 방법 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인증 : 입력한 신분ID의 시스템에 등록된 이메일로 본인 인증 ✓ 휴대폰 인증 :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 신용카드 인증 :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BC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체크카드 사용 불가) ✓ 공용인증 : 공용인증서로 본인 인증(은행, 신용카드, 보험용 공인인증서 사용 불가) 	<p>4. 계정 및 신분 우선순위 입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할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 신분 우선순위 설정 ✓ 2개 이상의 신분(직원&학생)을 가진 경우, 최우선 순위 신분으로 로그인 됨 ✓ 아이디 규칙 : 기존 학번/사번 사용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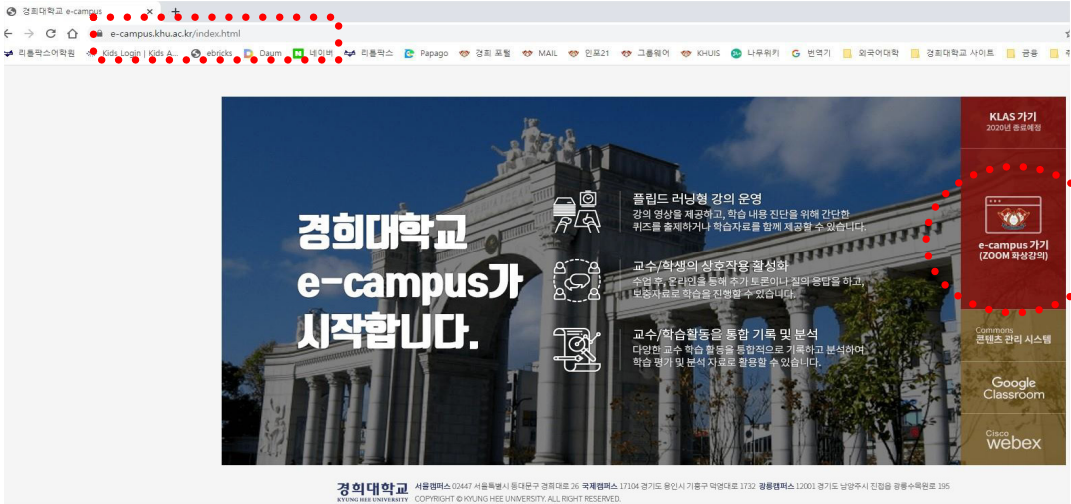
비대면수업(e-campus) 이용안내

1. 2025-2학기 수업 운영방식 : 대면수업

2. e-campus 접속방법:

- [PC접속 url] [http:// e-campus.khu.ac.kr](http://e-campus.khu.ac.kr)(인포21통합 ID/PW 로그인)
- [모발앱] Play 스토어 또는 마켓에서 LearningX 다운로드
- ZOOM 활용 실시간 수업운영 : e-campus@khu.ac.kr로 교수자명, 사번, 경희대 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메일로 신청하여 라이선스 부여 후 e-campus 접속하여 수업운영 가능

① e-campus 가기(ZOOM 화상강의 선택)



② 통합 로그인(Info21 로그인 아이디와 동일)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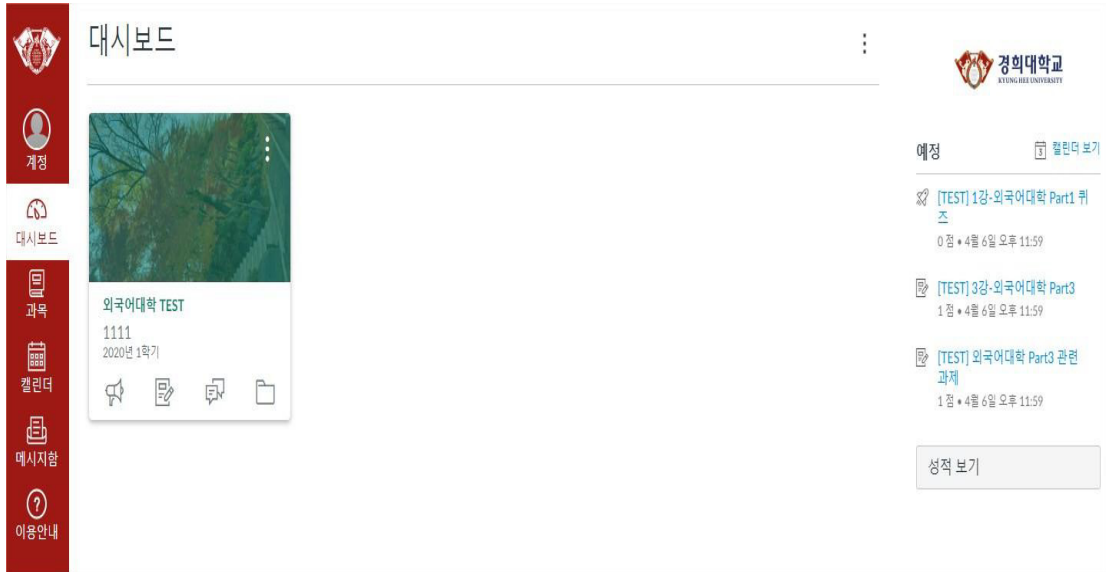
The screenshot shows the Kyung Hee University e-campus homepage. At the top left is the university logo and name. On the right are links for '공지사항' (Notice), '이용안내' (Usage Guide), and '로그인' (Login). The main banner features the text '경희대학교 e-campus가 시작합니다.' (Kyung Hee University e-campus has started). A dropdown menu is open, showing '통합 로그인' (Unified Login) with a red dashed circle around it, and '로그아웃' (Logout) below it. Below the banner are two main navigation sections: '공지사항' (Notice) with sub-categories '전체' (All), '공통' (Common), '교수' (Faculty), and '학생' (Student); and '이용안내' (Usage Guide) with sub-categories '전체' (All), '교수' (Faculty), and '학생' (Student). There are also links for '학습자매뉴얼' (Student Manual) and '교수자매뉴얼' (Faculty Manual).

③ LMS 바로가기 선택

The screenshot shows the same Kyung Hee University e-campus homepage. The dropdown menu is open, showing '통합 로그인' (Unified Login) with a red dashed circle around it, and '로그아웃' (Logout) below it. A red button labeled 'LMS 바로가기' (LMS Shortcut) is highlighted. Below it is a '마이페이지' (My Page) option. The rest of the page content, including the navigation sections and manual links, is identical to the previous screenshot.

④ 원편 메뉴 중 대시 보드 선택 후 강의중인 모든 강좌 확인 가능

모든 강좌 중 1개 강좌 선택(참고 : 붉은 박스는 강좌별 해당기능(공지/화일)으로 바로 접근 가능)



강의 평가

강의평가는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요구나 불편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 학기 2회에 걸쳐, 개설한 모든 강좌에 대하여 실시함

1. 강의평가 입력기간

중간평가, 기말평가 총 2회 실시

2. 강의평가 방법

- 1) 접속방법 : 인포21 로그인 → 수업/성적 → 수업 → 강의평가
- 2) 강의평가 목록을 확인하고 문항을 평가
- 3) 화면 상단의 답변방법 설명에 따라 설문문항을 모두 답변한 후, 강좌에 대한 개방형 질문(자유의견)을 입력하고, [저장] 단추 클릭(저장 후 수정 불가)
- 4) 강의평가는 공정성을 위하여 익명으로 진행되며, 강의평가 결과는 절대 공개 불가함
- 5) 기말 강의평가 완료 후 성적조회 가능함. 강의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성적공시 및 정정기간(7월 중, 1월 중)에 확인 가능

수업	교육과정조회 전자출결인증 강의평가(중간)	종합강의시간표 출석인정신청 강의평가(기말)	가설교과목조회 휴·결강및보강조회
수강	수강신청내역	수강희망과목신청내역	수강신청학점철회
성적	금학기성적조회 학점포기신청 핵심교양이수면제신청	세부성적조회 학업성취도우수자신청	전체성적조회 학점인정신청
교직	교직과정 이수신청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교육봉사활동

- ① 상단메뉴의 수업/성적 클릭
- ② 펼쳐진 메뉴의 수업>강의평가(중간) 클릭

성적 제도

1. 성적 열람기간

- 1) 학기별 지정기간 내
- 2) 강의평가를 해야만 성적열람이 가능하고, 강의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성적공시 및 정정기간 (7월초, 1월초)에 확인 가능함

2. 금학기 성적 조회

- 1) 인포21 로그인 → 수업/성적 → 성적 → 금학기성적조회
- 2) 성적조회시 유의사항
 - 성적처리기간을 확인
 - 과목별 강의평가 완료 후 성적을 조회할 수 있음

3. 전체 성적조회

인포21 로그인 → 수업/성적 → 성적 → 전체 성적조회

4. 성적등급 및 평가

등급	점수	평점	평가방식
A+	93 - 100	4.3	절대평가 적용
A	92 - 90	4.0	
A-	87 - 89	3.7	
B+	83 - 86	3.3	
B	80 - 82	3.0	
B-	77 - 79	2.7	
C+	73 - 76	2.3	
C	70 - 72	2.0	
C-	67 - 63	1.7	
D+		1.3	
D		1.0	
D-		0.7	
F	66점 이하	0	

5. 성적 FAQ

1) 출석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 수업일수는 15주이며, 학생은 수업일수의 3분의 2에 미달된 자는 해당 과목 성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공무 출장 및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이 가능한가요?

-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후 담당 교수님께 제출 가능합니다. 단, 출석인정 여부는 담당 교수님의 권한입니다. (테크노경영대학원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석인정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공무 출장으로 인한 결석은 증명서를 사전 혹은 사후에 제출한 경우, 학기당 3회까지 인정 가능
- 질병으로 인한 결석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주 이내의 범위에서 출석으로 인정 가능

학위논문과정 / 비논문 학위과정 안내

구분	내용	필요서류
학위논문 과정	- 논문예비계획서 제출, 논문지도교수 배정	논문예비계획서 제출
	- 개별 논문지도, 논문심사(발표), 논문제출	논문 제출
비논문 학위과정	- 논문대체과목 2과목 이수 - 졸업연구보고서 제출	졸업연구보고서 제출

※ 학위논문 과정과 비논문 학위과정 모두 동일한 학위를 수여받음

1. 학위논문과정

1) 아래 절차를 모두 마치고,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는 과정

- ① 1기 ~ 4기 : 공통필수 과목(경영통계 필수) 및 전공 교과목 이수
- ② 3기 : 주임교수 면담 → 논문예비계획서 제출
- ③ 4기 : 청구논문 접수 → 논문심사 → 논문제출

2) 신청방법

- ① 신청기간 : 수강신청은 없으며, 지정기간에 논문예비계획서 제출하면 행정실에서 '논문1' 교과목 수강신청 처리함(논문1을 신청한 학생의 경우 4기에 자동으로 논문2 수강신청 처리됨)
- ② 논문제출 프로세스

3기 : 주임교수 면담 → 논문 예비계획서 제출 → 논문 지도교수 배정

※ 유의사항

- 논문예비계획서 작성 시 학과, 전공, 성명, 이수학점, 학번, 가제목, 내용, 희망지도교수 등을 명확하게 기재
- 논문주제 및 해당학과의 여건을 고려하여 논문지도교수가 배정되므로, 희망지도교수로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논문지도교수 배정 후, 논문지도교수 연락처(연구실 또는 메일)를 확인하여 논문지도 요청

4기 : 청구논문 접수 → 논문심사 → 논문제출

가) 청구논문 접수

- 접수기간 : 논문심사일 2주 전까지
- 제출서류
 - 심사용 청구논문 4부
 - 논문심사위원 3명에게 논문 완성본 이메일 제출
 - 학위(청구)논문제출 승인서 1부(지도교수 서명 必)
- 제출처 : 테크노경영대학원 행정실(논문 완성본 파일만 해당 논문심사위원 이메일로 제출)
- 논문심사비 : 지정기간 내에 공지된 심사비를 계좌로 납부

나) 논문심사

- 논문심사 일정 및 장소는 주임교수, 지도교수가 결정
- 당일 발표를 위한 자료 준비 必
- 한 사람씩 차례대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완료 후 심사위원을 담당할 교수의 총평이 있음
- 학위논문심사 결과보고서 및 학위논문지도 결과보고서는 지도교수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공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논문 심사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심사하며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 합격 처리함

다) 논문제출

- 심사완료 후 중앙도서관(국제캠퍼스) 및 행정실에 논문 완성본 제출
- 중앙도서관 제출
 -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제출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학위논문 제출 배너 클릭 → 학위논문 파일 제출 → 제출확인서 출력
- 행정실 제출
 - 학위논문제출 확인서 1부, 논문표지+인준지 사본

2. 비논문 학위과정

- 1) 논문을 대신하여 6학점의 논문대체 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 이를 논문 제출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
- 2) 4기에 졸업연구보고서 제출

3. 학위논문과정 ⇔ 비논문 학위 과정 변경

1) 논문과정 → 비논문과정으로 변경 시

- ① 제출서류 : 변경사유서 + 논문 예비 계획서 + 성적증명서
- ② 유의사항
 - 비논문 학위과정은 논문대체과목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
 - 재학 연한 내에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추가로 등록하여 학점을 이수해야 하므로 유의 필요

2) 비논문과정 → 논문과정으로 변경 시

- ① 제출서류 : 변경사유서 + 논문 예비계획서
- ② 유의사항
 - 논문 과정자와 동일하게 논문1, 논문2 수강
 - 논문은 두 학기에 걸쳐 이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4기에 전환하였을 경우 논문1, 논문2 취득을 위 해 한 학기를 추가로 더 등록해야 하므로 유의 필요

학적변동 및 트랙과정

1. 휴학 및 복학

1) 신청기간 : 지정기간 내에 휴·복학 신청(학기시작 후 21일 이내)

※ 기간 내에 휴·복학 및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

2) 신청방법

인포21 로그인 → 학적 → [변동] 휴/복학 신청 → (승인확인)

3) 휴·복학 종류

구분	세부종류	유형	제출서류	기타 및 유의사항
복학	복학	-	• 복학원서(인포21)	• 복학처리 후 등록금 납부 (미등록 휴학이었을 경우)
휴학	학기휴학	-	• 휴학원서(인포21)	• 학기휴학(1학기 휴학)을 기본으로 함 • 최대 4번까지 휴학 가능 • 단, 연속 휴학은 최대 2번(2학기) 가능 • 휴학기간 종료 후, 추가 휴학신청 또는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미복학 제적 처리함
	특별휴학	해외파견	• 휴학원서 •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 증명서 또는 인사팀 확인 서면	• 일정기간 휴학 가능 • 매학기마다 휴학원서를 제외한 증빙서류 제출
		지방파견	• 휴학원서 • 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인사발령지 또는 인사팀 확인 서면	• 경기도 외 지방발령으로 인한 휴학 • 1학기에 한하여 휴학 가능
		출산	• 휴학원서 •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	• 최대 2학기까지 휴학 가능
기타		• 휴학원서 • 증빙서류	• 기타 특별휴학으로 인정되는 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결정됨	

2. 제적

1)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 ①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신청 또는 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 ②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연속 2회 휴학 만료 후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 ④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경우

3. 재입학

- 1) 재입학은 제적된 학생이 일정기간 경과 후 당해 연도 재입학여석이 있을 경우 재입학 허용
- 2) 제적전에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한 학년에 재입학 가능
- 3) 기타사항 : 등록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함

4. 트랙과정

- 1) 트랙과정은 해당 전공에 개설된 트랙 중 1개의 트랙을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함
- 2) 신청대상 : 3기 재학생
- 3) 신청시기 : 2기 이수 후 3기 등록 이전 소정의 기간
- 4) 신청방법 : 향후 공지예정

장학금

1. 장학생 선정 : 매학기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2. 장학금 지급방법

- 등록 전 : 등록금 고지서 감면처리
- 등록 후 : 학생 명의로 된 금융기관 계좌이체

3. 장학제도

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장학내용	
총장장학	• 총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조교장학	• 조교에 관한 규정에 의거함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성적우수장학	• 재학생 중 해당학기에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수업료의 일부	
모범장학	A	• 원우회 회장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B	• 원우회 임원 (5명 이내)	수업료의 일부
	C	• 계약학과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한 자	수업료의 일부
경희가족장학 (일반석사과정에 한함)	A	• 경희학원, 경희대학교 및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2년 이상 재직중인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	등록금 전액
	B	• 의료원 및 병설학교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	수업료의 50%
	C	• 경희대학교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수업료의 50%
경희동문장학 (일반석사과정에 한함)	A	• 본교 동문	수업료의 30%
	B	• 경희사이버대학교, 본교 평생교육원 및 글로벌미래교육원 학점은행제 동문 • 본 대학원 총동문회의 추천을 받은 자	수업료의 20%
학·군제휴장학	• 학·군 제휴 협약에 의하여 입학하는 현직군인 및 군무원	수업료의 40%	
공무원장학	• 현직 공무원	수업료의 40%	
특별장학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가계곤란자로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수업료의 일부	
기여장학	•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	수업료의 일부	
협약장학	• 본 대학원과 기관과의 협정에 의해 입학한 자	수업료의 20%	
국가고시장학	• 변리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이나 이와 동등한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수업료의 30%	
한국어역량 우수장학(중문MBA 과정에 한함)	• 외국인 학생 중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역량을 취득하여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	수업료의 일부	
비학위과정장학	• 비학위과정 지원자 중 본 대학원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득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 감면혜택이 중복일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장학만을 인정한다. 다만, 조교장학 및 모범장학은 중복 수혜를 허용할 수 있다.
 ※ 경희가족장학, 학·군제휴장학, 공무원장학, 협약장학은 재직 확인을 위하여 매 학기 해당 서류 제출

9 계약학과 과정 재학생 제출서류 안내

본 대학원에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기업제휴MBA)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본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학과(기업제휴MBA)과정 재학생의 산업체 재직여부와 산업체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을 위해 아래의 증빙서류를 매학기 제출하여야 함

1. 제출 대상

글로벌경영학과(계약학과), 건설안전보건학과, 미래혁신경영학과, 스마트기술경영학과, AI기술경영학과, 반도체융합학과 신입생 및 재학생(스마트기술경영학과, AI기술경영학과, 반도체융합학과)의 경우 추가서류 확인필요)

2.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신입생	가. 산업체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 (첨부파일 참조, 산업체 직인 날인必) 나. 법인명의 계좌입금내역 혹은 예산 편성내역 등 증빙서류 1부
재학생	가.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나. 재직증명서 (산업체 직인 날인 必) 다.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산업체 직인 날인 必) 라. 산업체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홈페이지 참조, 산업체 직인 날인必) 마. 법인명의 계좌입금내역 혹은 예산 편성내역 등 증빙서류 1부
유의 사항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1학기의 경우 매년 2월 이후, 2학기의 경우 매년 8월 이후 발행본이어야 함

3.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4. 기타 및 유의사항

- 학기 납부 등록금 중 산업체부담금 지원에 관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 관련문의 : 031-201-2130~2

10 학생생활 안내

■ 학생증

가. 학생증 스마트 카드

- 신분증(ID Card), 교내 이용(도서관 이용, 건물출입) 및 금융서비스(현금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 서비스

나. 신청기간

- 1학기 : 2~3월 중
- 2학기 : 8~9월 중
- ※ 정확한 신청기간은 테크노경영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

다. 신청방법

① 비금융(학생증) 신청

- 인포21 로그인 → 학생증발급 → scard.khu.ac.kr → 비금융 카드 신청

② 금융(학생증) 신청

- 하나원큐 어플 설치 후 영하나 검색(뱅킹 → 금융서비스 → 영하나) 후 '학생증 체크카드 발급' 바로가기 클릭
- ※ 자세한 발급방법은 테크노경영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

■ 제증명(증명서 발급)

1. 증명종류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휴학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2. 발급방법

- ① 각종증명서 발급은 학생회관 2층에 위치한 학생지원센터나 자동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② 경희대학교 인터넷증명발급센터(<http://kyunghee.certpia.com>)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 가능

학생지원센터(국제캠퍼스)	
위치	학생회관 2층
전화	031-201-2288(Fax. 031-204-8123)
이용시간	평일 09:00~17:30(토·일·공휴일 휴무)

3.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가능

- 단, 계약학과(기업제휴MBA)과정 학생의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한 납입증명서만 출력 가능
산업체부담금 납입증명서는 행정실로 별도 문의

■ 중앙도서관 이용안내

1. 개관시간 : 학기 중(평일 08:30~21:00, 토요일 09:00~17:00),
방학 중(평일 09:00~17:30, 토요일 휴관)
2. 대출권수 : 1회에 15권 이내
3. 대출기간 : 28일이며 연체시 1책당 1일 100원의 연체료를 부담해야 함

■ 원우회 이용안내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원우회실(멀티미디어교육관 7층 707호(세미나실 제외), 701호)을 이용할 수 있음

■ 병사관계

- 본 대학원에 등록 후 14일 이내에 아래 해당 사유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 신고해야 함
- 군필자(예비군 편성대상자)
 - 민방위 훈련대상자
 - 신상변동시(휴학, 미등록, 제적, 거주지 주소이전 등)
 - 해외 출국시(사전 및 귀국 후 14일 이내 해제신고)

■ 편의시설

본 대학교 제2기숙사 건물에는 식당, 카페, 편의점, 우정원 기숙사 건물에 하나은행 이용 가능

■ 주차 및 정기 주차권 등록 안내

1. 수업이 있는 야간시간에 한하여 본 대학원을 비롯한 특수대학원생을 위하여 '4시간/2,000원'으로 할인하여 주차할 수 있음(매 수업 시 본인이 707호 입구 PC로 직접 할인 등록해야 함)
2. 학기 초 정기주차권 신청가능
 - ① 신청기간 : 추후 테크노경영대학원 홈페이지 공지 예정

② 신청방법 : 웹기반에서 정기간 등록 및 변경을 자유롭게 신청하고 개인 결제 진행

가) 신청 웹 주소 : khu.awp.co.kr

나) 신규 신청자 신청방법

1. 로그인 화면	2. 차량등록여부 확인	3. 개인정보활용 동의
		<p>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자 승인</p>
4. 사용자정보입력 (ID는 차량번호)	5. 신청완료 문자확인 (관리자승인 전)	6. 관리자 승인
7. 관리자승인 문자확인 및 결제페이지 접속	8. 정기권 구매기간 선택	9. 정기권 기간 및 결제금액 확인 후 {결제하기} 선택
10. 온라인 결제	11. 정기권 기간 확인	12. 결제 정보 확인

★ 사용자 정보 입력 시 재학 확인자료(재학증명서 또는 인포 21 화면 캡처) 업로드 필요

★ 신청완료 후 관리자 승인까지 약 1일의 기간이 소요됨

③ 기타 및 유의사항

- 정기주차권은 본인이 직접 웹에 접속하여 신청함(행정실 대행 처리 불가)
- 결제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제 완료가 진행 되어야 정기주차 가능함
- 정기주차 차량 변경, 수리 등으로 인한 차량 대차 등의 주차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주차관리실(공대(지하)주차장 내, 031-201-3773)로 문의 바람

3. 주차구역 안내

- ① 공대(지하)주차장, 우정원 주차장, 체육대학 주차장 등을 이용 바람
(멀티미디어교육관 주차장은 교직원 전용 주차공간이며 주차공간 협소로 상기구역 이용권장)
- ② 주차공간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차량 및 교직원 주차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 수시 단속 및 강력 조치할 예정이며, 주차 5회 위반 시 다음 학기 정기주차권 발급 불가함)

■ 공지사항 게시 안내

각종 공지 및 안내사항 등은 본 테크노경영대학원 홈페이지(<http://gstm.khu.ac.kr>)에서 수시 확인

■ 기타사항

학생의 이메일 또는 SMS를 통하여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인포21(<https://info21.khu.ac.kr>)에서 본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등록 및 확인

시행 : 2025. 9.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이하 “대학원 학칙”이라 한다)」 및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시행세칙(이하 “학칙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과정)

- ①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둔다.
- ②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계약학과의 입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본 대학원 학위과정의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2장 입학

제4조(학생선발)

본 대학원의 학생선발은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으로 구분하며, 비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 한다.

제6조(입학전형)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입학전형방법은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에 의한 일반전형과 구술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특별전형으로 하며, 그 세부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지원자격)

①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소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외 4년제 정규 대학교에서 정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정규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 편입학은 국내·외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재입학은 본 대학원에서 1개 학기 이상 성적을 인정받은 후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2회 이상 제적된 자 및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④ 편입학, 재입학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정원 외 입학)

정원 외 입학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제9조(입학허가)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입학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 방법에 의하여 합격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3장 등록

제10조(등록)

학생은 소정의 등록금을 매 학기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수업연한 이후 등록)

수업연한 동안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전부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비논문학위 취득을 위해 다음 학기에 추가로 등록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6학점 미만 : 등록금의 1/2
2. 6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제12조(입학금 및 등록금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 또는 등록금을 반환한다.

1. 입학금 또는 등록금이 과오납 된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6.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할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3조(입학금 및 등록금 반환기준)

입학금 및 등록금 반환기준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제4장 수업

제14조(수업연한)

-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학기(2년)로 한다. 다만, 재외국민 및 외국인 대상 MBA과정과 특정기업의 계약학과인 글로벌경영학과(MBA)의 수업연한은 3학기(1년 6개월)로 할 수 있다.
- ② 편입학자는 전적대학원에서 이수한 학기 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본 대학원에서 최소 2개 학기 이상을 수학하여야 한다.
- ③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8조에 따라 개설되는 계약학과의 수업연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재학연한)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수업방법)

- ①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과정의 특성상 주간·주말 수업을 운영하거나, 계절학기 수업을 운영할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전공의 이수)

- ① 학생은 각 학과(전공)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설치 학과에 개설된 전공 내에 분야별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개설과목)

본 대학원의 교과목은 학과 또는 전공에서 정한 교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되, 필요시에는 공통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제19조(수강신청)

- ① 매학기 수강학점은 논문학점을 제외하고 9학점(특정기업의 계약학과인 글로벌경영학과(MBA)의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인터넷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 ③ 수강신청 과목의 정정은 개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20조(출석인정)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고, 교강사가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공무 출장(학기당 3회에 한하며, 소속 기관장의 증명서 제출 필요)
2. 질병(3주 이내에 한하며, 병·의원장의 진단서 제출 필요)

제21조(교과목 개설)

교과목 개설을 위한 최소 수강인원은 5인으로 한다. 다만, 수강인원 5인 미만인 강좌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설할 수 있다.

제22조(출·결강 관리)

- ① 교강사는 수업일수를 준수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하게 될 경우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② 교강사는 휴강하게 될 경우,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학적변동

제23조(휴학)

- ①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② 휴학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단위로 하되, 총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별휴학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학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2. 해외파견으로 인한 휴학은 해외파견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인사팀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3. 전근(경기도 외 지방발령)으로 인한 휴학은 최대 2학기까지 가능하며, 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인사발령지 또는 인사팀 확인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전근기간이 2학기를 초과할

경우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허가할 수 있음

4. 본인의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최대 2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고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5. 기타 특별휴학으로 인정되는 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하에 결정한다.

④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 이내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의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3차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첨부)

2. 군휴학하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인정한 경우

제24조(복학)

① 휴학 후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여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까지 연장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본 대학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제26조(전과·전공변경)

① 학과변경(이하“전과”라 한다) 또는 전공 변경은 1회에 한하여 지정된 기간에 할 수 있으며, 마지막 학기에는 신청을 불허한다.

② 전공 또는 학과의 통·폐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 횟수의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전과 또는 전공을 변경한 경우 이수과목 및 전공을 고려하여 재학 학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편입학·재입학자는 전과를 불허한다.

제6장 학점 및 성적

제27조(수료학점)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제28조(학점 인정)

①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교과목의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해당 과목의 성적이 C-(1.7)이상이어야 한다.

- ② 편입학생이 전적 대학원의 동일 또는 유사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③ 편입학생은 해당 학과(전공) 내에서 최소 12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이 경우 논문이수 또는 논문대체 학점은 별도로 취득하여야 한다.

제29조(이수과목 및 성적)

- ①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 교육과정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의 편성은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 ②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 과목 평균성적은 B-(2.7)이상이어야 한다.

제30조(성적평가)

- ① 성적평가는 출석, 시험, 과제 등 해당 교과목의 강의계획서에 따라 절대평가로 실시한다.
- ② 평가는 등급으로 하며, 기준은 대학원학칙을 따른다.
- ③ 재외국민 및 외국인 대상 MBA과정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성적 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B+(3.3) 이상 90% 이내(A+는 20% 이내)로 한다.

제31조(타 대학원 과목 이수)

- ① 본 대학원 이외의 본교의 타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과장의 동의와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9학점 범위 내에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 ② 본 대학원 학생이 타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금은 본 대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장 학위논문

제32조(논문지도)

- ① 석사과정 3기 등록을 마친 자로서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장을 통하여 학위지도교수를 배정받고 논문 예비계획서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 MBA과정과 수업연한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는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논문 예비계획서 제출 시기를 별도로 정한다.

제33조(학위지도교수)

- ① 학위지도교수는 본교의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타교 전임교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학위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학제간 학위지도교수가 필요한 경우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공동 학위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34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로서 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이 B(3.0)이상인 자
2. 논문예비계획서를 제출하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로서 논문1 및 논문2를 모두 이수한 자
3. 당해학기 졸업예정자

제35조(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및 시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제출 승인서 1부
2. 학위논문지도결과 보고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심사용 논문 3부

제36조(논문심사위원 위촉)

- ① 심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해당 학계의 권위자 중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정한다.
- ② 심사위원은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외부 심사위원은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논문심사)

- ①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진행 방법은 과정별로 정한다.
- ② 논문심사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심사하며,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에 합격으로 처리한다.
- ③ 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장은 논문의 심사결과보고서를 논문심사 후 지체없이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학위논문제출)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학위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아 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논문과목)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교과목 논문1, 논문2를 각각 3기, 4기에 순차적으로 수강신청하여 이수해야 한다. 단 재외국민 및 외국인 대상 MBA과정과 계약학과 과정의 경우 논문1, 논문2의 이수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40조(비논문학위)

- ① 학위취득은 논문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논문학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논문대체과목을 추가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학과별 논문대체과목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시행세칙에 이를 명시한다.

제41조(논문대체과목)

논문대체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수료학점외에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 이를 논문 제출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제8장 학위수여

제42조(학위수여 및 종별)

- ① 본 대학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1. 논문심사 통과 또는 논문대체과목(6학점) 이수
 2. 각 과정별 수업연한 이상 등록
 3. 수료학점 이상 취득
 4. 총 평균성적 B-(2.7)이상 취득
 5. 각 학과(과정)별 교육과정시행세칙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
 6. 졸업연구 통과(학위논문심사를 거쳐 졸업예정인 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MBA과정 제외)
- ② 위 제1항의 요건 중 제1호, 제6호를 제외한 모든 과정을 충족한 자는 수료처리한다.
- ③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1]과 같다.
- ④ 비학위과정 이수자에게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43조(학생의 의무)

본 대학원 학생은 학내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본 대학원 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징계)

- ① 학생이 본 내규를 포함한 학내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한다.
- ② 징계의 종류는 견책, 근신(근로봉사),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 ③ 견책, 근신(근로봉사), 유기정학 처분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행하며, 무기정학, 제적 처분은 본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제45조(장학금 지급기준)

- ①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별표 2]에서 정한 장학금의 수혜요건이 갖춰진 자
 2. 총장 또는 본 대학원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기타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
- ② 장학 혜택을 받은 학기에 미등필 휴학자, 징계를 받은 자,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는 장학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6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7조(장학금의 이중수혜)

- ① 장학금의 이중수혜는 허용하지 않는다.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우회 활동 장학 등 등록금지원과 무관한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제48조(장학생의 선정)

- ① 장학생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선정할 수 있다.
- ② 신(편)입학자가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입학 전 소정의 기간내에 장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별표 2]에서 지정한 장학 중 매학기 확인이 필요한 장학의 경우 학기별 소정의 기간내에 장학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장학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등록 전 : 등록금고지서 감면처리
2. 등록 후 : 학생 명의로 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제10장 외국인 학생

제50조(입학전형)

- ① 외국인의 입학전형은 수학능력과 재정능력 심사로 한다.
- ② 수학능력과 재정능력은 입학지원 시 제출서류를 근거로 심사한다.

제51조(지원서류)

외국인이 입학허가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2조(입학전형 시기)

외국인에 대한 입학전형은 수시로 시행한다.

제53조(외국인 등록)

- ① 본 대학원에 수학할 목적으로 입국한 자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② 국내 체류기간 중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4조(문제학생에 대한 조치)

외국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대학원장은 이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보고한다.

1. 입학허가 후 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한 경우
2. 출결사항이나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유학생생활을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제적, 행방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유학 목적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불법취업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거나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55조(외국인 학생 보험가입 의무)

외국인 학생은 입학 후 졸업시까지 국민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장 직제

제56조(구성)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학과장 등을 두며, 행정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57조(학사운영위원회)

- ① 본 대학원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과 부대학원장, 학과장, 행정실장, 행정직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본 대학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행정직원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입학과 졸업 등 주요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 2. 입학전형 계획 수립 및 선발에 관한 사항
 - 3. 장학제도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4.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5. 기타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제12장 보칙

제58조(보칙)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등 본교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8년 5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8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3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전공의 재적생은 별표1의 글로벌경영학과 서비스경영전공으로 전공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5항에 따른 해당학과 주임교수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9조, 제14조제2항,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2016년 이전 입학생이 수업연한을 4학기로 변경하여 졸업을 원할 경우, 소정의 사유서를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에 의해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근거하여 졸업하는 경우, 등록금은 잔여학기인 한학기의 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2016년 이전 입학생은 별도의 고지가 없는 한 졸업 시까지 자연인상분의 등록금을 반영하여 고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학년도 이전입학생은 4기에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제9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2항의 2, 제9조 제5항, 제2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조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자의 전공은 입학 시점의 것을 적용한다.

② 부칙(2016.3.1일자 시행)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제9조(수업연한), 제14조 제2항(등록), 제24조 제1항(논문지도교수 및 교수배정)은 내규 개정에 따라 제9조는 제22조 제1항으로, 제14조 제2항은 삭제, 제24조 제1항은 제41조 제1항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③ 부칙(2017.9.1.일자 시행) 제2조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제3조 제2항의 2, 제9조 제5항, 제24조 제5항은 내규 개정에 따라 각각 제7조 제1항 제2호, 제22조 제6항, 제41조 제2항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의 제35조(수료학점), 제36조(학점인정)제2항, 제4항, 제44조(학위청구 논문 제출자격) 제3호, 제57조(학위수여 및 종별) 제1항 제3호, 제6호, 제10장(종합시험)은 202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① 본 내규의 제 10장 종합시험의 폐지 및 제57조(학위수여 및 종별) 1항 6호의 변경에 따라 2023.10.1.기준 본 대학원 재적생 중 2024.03.01.이후 졸업하는 자는 종합시험을 면제하기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졸업연구를 수행하여 통과한 자에 한해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② 본 내규의 [별표1] 1.테크노경영대학원 학과·전공·학위종별 및 입학정원에 의거 2024.03.01.부로 복지경영학과가 심리상담경영학과로 변경함에 따라 2023.10.1.기준 복지경영학과 재적생은

정해진 기간 중 소속변경 신청에 의거 심리상담경영학과로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본 내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테크노경영대학원 학과 · 전공 ·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1. 테크노경영대학원 학과 · 전공 ·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과 정	학 과	전 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석사학위과정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	경영학석사	87명
	건설안전경영학과	건설안전경영	공학석사	
	스포츠경영학과	스포츠경영	체육학석사	
	심리상담경영학과	심리상담경영	경영학석사	
	디지털융합학과	디지털융합	공학석사	

2. 계약학과 과정 학과 · 전공 ·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과 정	계약학과	전 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석사학위과정 (계약학과)	건설안전보건학과	건설안전보건	공학석사	-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	경영학석사	
	글로벌경영학과(MBA)	글로벌경영	경영학석사	
	스마트기술경영학과	스마트기술경영	경영학석사	
	미래혁신경영학과	미래혁신경영	경영학석사	
	SI기술경영학과	SI기술경영	경영학석사	
	반도체융합학과	반도체융합	공학석사	

3. 재외국민 및 외국인대상 학위과정

과 정	학 과	전 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재외국민 및 외국인 MBA 과정	글로벌경영학과	기업경영	경영학석사	-
		마케팅		
		미디어경영		
		금융경영		
		예술경영		
		스포츠경영		

[별표 2]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장학내용
총장장학	• 총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조교장학	• 조교에 관한 규정에 의거함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성적우수장학	• 재학생 중 해당학기에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수업료의 일부
모범장학	A • 원우회 회장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B • 원우회 임원 (5명 이내)	수업료의 일부
	C • 계약학과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한 자	수업료의 일부
경희가족장학 (일반석사과정에 한함)	A • 경희학원, 경희대학교 및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2년 이상 재직중인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	등록금 전액
	B • 의료원 및 병설학교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	수업료의 50%
	C • 경희대학교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수업료의 50%
경희동문장학 (일반석사과정에 한함)	A • 본교 동문	수업료의 30%
	B • 경희사이버대학교, 본교 평생교육원 및 글로벌미래교육원 학점은행제 동문 • 본 대학원 총동문회의 추천을 받은 자	수업료의 20%
학·군제휴장학	• 학·군 제휴 협약에 의하여 입학하는 현직군인 및 군무원	수업료의 40%
공무원장학	• 현직 공무원	수업료의 40%
특별장학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가계곤란자로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수업료의 일부
기여장학	•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	수업료의 일부
협약장학	• 본 대학원과 기관과의 협정에 의해 입학한 자	수업료의 20%
국가고시장학	• 변리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이나 이와 동등한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수업료의 30%
한국어역량 우수장학(중문MB A과정에 한함)	• 외국인 학생 중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역량을 취득하여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	수업료의 일부
비학위과정장학	• 비학위과정 지원자 중 본 대학원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득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감면혜택이 중복일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장학만을 인정한다. 다만, 조교장학 및 모범장학은 중복 수혜를 허용할 수 있다.

※ 경희가족장학, 학·군제휴장학, 공무원장학, 협약장학은 재직 확인을 위하여 매 학기 해당 서류 제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경희대학교 학칙」 제4조에 의거하여,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한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의 종류) 본교에는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2. 전문대학원 : 동서의학대학원, 국제대학원, 체육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이하 “의학대학원”이라 한다),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의학대학원”이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이하 “법학대학원”이라 한다)
3. 특수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공공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법무대학원, 관광대학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간호대학원

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각 과정 안에 연구기관, 산업체 및 정부기관과의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학과간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전문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복합학위과정 포함), 학·연·산 협동과정 및 학과간협동과정을 둘 수 있으며, 국제대학원에는 연계과정을, 동서의학대학원에는 통합과정을, 법학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③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④ 각 대학원에는 학위과정 이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를 둘 수 있으며, 계약학과에 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과정(복합학위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① 일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

- ③ 특수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총 정원제로 하며,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별표 3]과 같다. 특수대학원별 입학정원은 총 정원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입학

제5조(입학전형 횟수 및 시기) ① 각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3월 1일, 9월 1일)로 하며 입학전형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실시하는 정시전형, 정시전형 이후 결원에 대해 수시로 선발하는 수시전형 및 입학 6개월 이전에 학생을 선발하는 조기전형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학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도 개시일로 하며 입학전형의 실시횟수 및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입학지원 자격) ① 각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의 경우 현직 교원에 한하여, 법학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당해 연도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 박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제7조(입학지원절차)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지원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입학전형방법) ①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 방법은 서류심사, 구술시험, 필기시험 등에 의한 일반전형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특별전형으로 한다. 다만, 학과나 전공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학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모집 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③ 법학대학원의 입학전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입학허가) ①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절차를 수행하고 수학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입학허가의 취소)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1. 입학전형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 제2항의 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0조(입학전공분야)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하위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연계과정의 경우 석사과정의 전공은 학사과정의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중 하나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11조(교직원 입학제한) ① 본교 전임 교직원은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②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제37조 제10항에서 규정한 조교,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별표3] 및 [별표4]의 의료직(전공의)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별표2]의 행정직원 중 재직기간 2년 이상인 직원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일반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학생) 각 대학원은 기업체 등 외부 관련 기관의 위탁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정원의 입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그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14조(재입학·편입학 및 전과) ① 총장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범위 안에서 재입학·편입학 및 각 대학원간의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에서의 편입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해당 부서장은 학과 또는 전공의 전과 및 전공변경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③ 전문대학원간 또는 특수대학원간에 학과 또는 전공의 통폐합이 있을 경우 폐지된 학과 또는 전공의 재적생은 입학한 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생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총장은 통합되는 대학원의 해당학과 또는 전공으로 이적을 허가 할 수 있다.

④ 폐지되는 학과 또는 전공의 재적생이 해당 대학원 내의 학과 또는 전공으로 이적하는 경우 당해 학생이 그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거하여 타 대학원으로 이적할 경우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전부를 이적한 대학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5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학적변동

제16조(휴학) ① 휴학은 일반휴학과 특별휴학으로 구분하며 학생은 해당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 할 수 있다.

② 일반휴학은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은 모두 합하여 아래의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대학원명	석사과정	통합과정	박사과정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4개학기	6개학기	4개학기
전문대학원	동서의학대학원	2개학기	4개학기	2개학기
	국제대학원	2개학기	-	2개학기
	체육대학원	4개학기	-	4개학기
	의학대학원	6개학기	-	6개학기
	치의학대학원	8개학기	-	8개학기
	법학대학원	4개학기	-	4개학기
특수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2개학기	-	-
	평화복지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	4개학기	-	-

③ 병역의무 이행, 출산으로 인한 휴학 등 특별휴학 기간은 제2항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휴학의 종류, 사유, 기간 등 특별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제17조(복학) 휴학을 한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되 그 시기는 해당 부서장이 지정한 기간내로 한다.

제18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해당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 자퇴할 수 있다.

제19조(제적) ① 총장은 해당 부서장의 제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적할 수 있다. 다만, 각 대학원 내규에서 유급, 성적경고, 타교입학, 재학연한 초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의 제적사유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 ② 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해당 부서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통합과정에서 제적한다.
- ③ 국제대학원과 평화복지대학원의 경우 2개학기 연속 평균평점 B-(2.7)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제적한다.

제4장 수업연한 · 교과과정 · 학점 · 성적 및 수료

제20조(수업연한) ①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구분	대학원명	석사과정	통합과정	박사과정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2년	4년	2년
전문대학원	동서의학대학원	2년	4년	2년
	국제대학원	2년	-	2년
	체육대학원	2년	-	2년
	의학대학원 - 박사학위과정(복합학위과정)	4년	-	7년
	치의학대학원 - 박사학위과정(복합학위과정)	4년	-	7년
	법학대학원	3년	-	2년
특수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	2년	-	-
	평화복지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	2년 6개월	-	-

- ② 일반대학원과 국제대학원의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
- ③ 동서의학대학원, 국제대학원, 경영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법무대학원, 관광대학원, 공공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국제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각 내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 대상 MBA과정과 특정 기업의 계약학과인 글로벌경영학과(MBA)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수업연한은 1년 6개월로 한다. 과정운영의 세부내용은 「테크노경영대학원내규」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⑤ 일반대학원의 경우 학부 졸업 6개월 이전에 대학원 입학허가 받아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입학한

자(이하 “예약입학자”라 한다) 및 학부 졸업 1년 이전에 대학원 입학허가 받아 학·석사연계(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에 입학한 자는 6개월 이내, 통합과정에 입학한 자는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⑥ 국제대학원의 경우 연계과정에 입학한 자는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⑦ 경영대학원에서 패스트트랙 MBA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패스트트랙 MBA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단, 과정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은 「경영대학원 내규」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⑧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각 내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21조(학기) 각 대학원의 학기는 매학년도 2개 학기 내지 4개 학기로 한다. 다만,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은 2개 학기로 한다.

제22조(교육과정) ① 각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 ② 해당 부서장은 협의를 통하여 교과목을 공동 개설할 수 있다.
- ③ 법학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법학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④ 외국대학(원)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학위과정의 수료인정) ①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각각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다만, 일반대학원의 경우 선수학점은 수료를 위하여 취득하여야 하나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통합과정에서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고, 4년 이상 등록하고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 ③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일반대학원 통합과정의 석사학위과정으로 수료를 원하는 경우 3기 이후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료 시 총 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경영대학원은 30학점
3. 국제대학원은 45학점(단, 국제통상협력학과 한국개발경험 및 경제협력 전공, 산업 및 무역정책 전공은 42학점, 국제개발협력학과 국제개발컨설팅 전공은 36학점, 환경·지속가능개발 전공은 42학점, 국제경영학과 국제농식품경영전공, 국제인적자원경영전공은 36학점)

4. 평화복지대학원은 24학점
5. 공공대학원은 32학점
6.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은 160학점
7. 법학대학원은 96학점
8. 법무대학원은 28학점
9. 간호대학원은 26학점(단, 노인전문간호사전공은 36학점, 정신전문간호사전공은 35학점)
10. 관광대학원은 30학점

④ 각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36학점으로 하고 통합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60학점으로 한다. 다만, 국제대학원의 경우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12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⑤ 일반대학원의 경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인정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의한다.

⑥ 수료 및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과목 평점평균은 B-(2.7)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각 대학원 내규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⑦ 외국대학(원)과의 협약을 통한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과정의 경우, 협약을 통해 수료에 필요한 기간과 학점을 추가할 수 있다.

⑧ 각 과정별로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⑨ 외국대학(원)과의 협약을 통해 공동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각 학위과정의 매 학기 취득학점은 논문지도학점 및 선수학점을 제외하고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2학점까지 취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학기당 취득학점을 달리 할 수 있다.

1. 일반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12학점
2. 일반대학원 예약입학자 12학점, 학석사연계과정 12학점
3. 동서의학대학원 의학영양학과 18학점
4.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 25학점
5. 평화복지대학원 9학점
6. 체육대학원 12학점
7. 법학대학원 석사과정 20학점, 박사과정 9학점
8. 국제대학원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석사과정 학생의 직전학기 평점이 4.0 이상이거나 학과장이 승인한 경우 18학점
 - 나. 연계과정으로 입학한 경우에는 15학점
 - 다. 국제통상협력학과 석사과정 한국개발경험 및 경제협력 전공, 산업 및 무역정책 전공, 국제개발 협력학과 석사과정 환경·지속가능개발 전공은 평점에 관계없이 18학점
9. 테크노경영대학원 9학점(논문학점 제외), 단, 특정기업의 계약학과인 글로벌경영학과(MBA)의 경우 12학점으로 한다.
10. 경영대학원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패스트트랙(3학기) 입학자 : 12학점
 - 나. 패스트트랙(4학기) 입학자 : 10학점
 - 다. 일반석사과정 : 8학점
11. 간호대학원 7학점(단, 노인전문간호사전공과 정신전문간호사전공은 12학점)
12. 그 외 특수대학원 8학점
13. 석사학위과정 수료학점이 2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12학점
- ③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과정의 학생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선수학점)

- ① 각 대학원은 제23조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추가로 선수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1. 일반대학원 : 하위 학위과정의 학과(전공)과 상이한 학과(전공)에 입학 한 자
 2. 전문대학원 : 하위 학위과정의 전공과 상이한 전공으로 입학한 자 또는 특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 한 자
- ② 선수학점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제26조(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교과목의 연계)
- ① 본교 학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사학위과정의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가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6학점까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의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6학점까지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 전에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 중 1인과 해당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법학대학원의 경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법학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15학점까지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국제대학원의 경우 학사학위 과정 중 이수한 국제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12학점까지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학점교류 학점의 인정)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이 본교 내외의 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박사학위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통합과정은 18학점 이내에서 제23조에 규정한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외국대학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수료학점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고,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다른 법학대학원 또는 법학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③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가 각 학위과정의 동일 학과 및 전공에 재입학 하였을 때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

제28조(학업평가) ① 학업성취의 평가는 등급으로 하며 각 등급별로 백분위 점수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법학대학원, 의학대학원은 별도로 정한다.

[치의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공공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을 제외한 각 대학원]

등급	평점	점수
A+	4.3	100
A0	4.0	96
A-	3.7	93
B+	3.3	89
B0	3.0	86
B-	2.7	83
C+	2.3	79
C0	2.0	76
C-	1.7	73
D+	1.3	69
D0	1.0	66
D-	0.7	63
F	0	0
P(급제)	-	-
N(낙제)	-	-

[치의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공공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

등급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공공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치의학대학원	평점
	점수		
A+	93~100	93~100	4.3
A	90~92	90~92	4.0
A-	87~89	87~89	3.7
B+	83~86	83~86	3.3
B	80~82	80~82	3.0
B-	77~79	77~79	2.7
C+	73~76	73~76	2.3
C	70~72	70~72	2.0
C-	67~69	67~69	1.7
D+	-	63~66	1.3
D	-	60~62	1.0
D-	-	57~59	0.7
F	66점 이하	56점 이하	0
P(급제)			
N(낙제)			

※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은 [(교과목별평점×학점)의 총합]÷ 수강신청 총학점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며 그 이하는 절사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과목에 대하여는 점수와 평점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급제와 낙제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제는 P등급, 낙제는 N등급으로 표시하되, 교과목에 따라 급제만을 표기할 수 있으며, 성적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③ 성적의 D-등급 이상과 P를 급제로 하고 F등급과 N등급을 낙제로 한다.

제29조(학점인정) ①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일의 2/3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성적등급은 D-(0.7) 이상으로 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과목 평점평균은 C(2.0)이상으로 하며, 법학대학원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 및 성적등급,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과목 평점평균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학위수여

제30조(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① 각 대학원의 각 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별표1] 내지 [별표3]에 따라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 소정 과목 6학점 이상 추가 취득, 졸업작품 제출, 졸업시험 합격, 인턴십 보고서 제출, 국내·외 저명 학술지 발표 등의 방법을 해당 대학원 내규로 정하여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고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에서 복합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각 대학원은 각 대학원 내규에 따라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박사학위 등의 표기방법) 학위기의 표기방법은 각 대학원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32조(명예박사학위) ①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단, 사안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3조(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2. 학점의 평점평균이 B-(2.7) 이상인 자
3.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기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 사항

제34조(학위자격 시험) 학위자격 시험은 구술시험, 외국어시험, 전공시험, 공개발표 등의 학위 자격 관련 평가를 포괄하며, 학위자격 시험 과목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35조(통합과정의 석사학위 취득) 통합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자가 박사학위 취득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석사학위 졸업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만을 취득할 수 있다.

제36조(논문심사) 제36조(논문심사) ① 학위청구 논문심사는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해당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해당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된 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 박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에 별도로 정한다.

제37조(박사학위 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해당 대학원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 하여야 한다.

제38조(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 ① 총장은 석사·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아 학위수여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10년 이하의 학위청구논문 제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39조(학생의 의무) 각 대학원의 학생은 학칙 및 소속 대학원 내규를 비롯한 본교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해당 부서장, 소속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 및 학위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학생회의 설치) ①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을 함양하고 자유롭게 창조적인 학술활동을 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에 학생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생회의 명칭은 각 대학원별로 정할 수 있으며,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생 자치활동의 육성과 발전을 돕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④ 학생회 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해 학생회의 업무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대학원은 소속, 이름, 학번, 기수, 전화번호, 이메일의 학생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회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이후 즉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41조(징계)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이 학칙 및 각 대학원 내규를 비롯한 본교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견책·근신(근로봉사)·유기정학·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징계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서장이 제청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견책·근신(근로봉사)·유기정학 처분은 해당 부서장이 행하고 무기정학·제적처분은 총장이 행한다.

제42조(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발라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장 공개강좌, 연구생

제43조(공개강좌) ① 총장은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기간·수강정원·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개강좌를 개설할 때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부서장이 공고한다.

제44조(연구생) ① 각 대학원의 석·박사학위과정에서 연구 또는 수업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 및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장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45조(공동운영 약정 및 운영) 각 대학원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외국대학과 약정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6조(용어의 정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라 함은 본교 각 대학원이 외국대학의 석·박사학위과정을 외국대학과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7조(운영방법) ① 교육과정 공동운영 방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체결한 해당 외국대학과의 약정에 따르되,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학생 평가 등 수업 운영에 있어 해당 외국대학의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교육과정을 운영코자 할 때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고, 해당 교육과정의 4분의 1 이상을 본교 전임교원이 외국대학에서 직접 수업하도록 해야 한다.

제48조(명칭사용) 교육과정 공동운영에는 본교와 외국대학의 명칭을 차례로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9조(학위수여)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는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공동 명의 또는 본교 단독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9장 대학원위원회 및 직제

제50조(대학원위원회의 구성) ①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③ 각 대학원에는 학사운영위원회를 두어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④ 각 대학원의 학사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대학원 내규에서 정한다.

제51조(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학칙 및 각 대학원의 제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제1항 중 제1호, 제3호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나 입학사정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52조(학과장) 각 대학원은 각 학과 또는 전공마다 1인의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제53조(학위지도교수) ① 학위지도교수는 각 대학원 또는 유관 학부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은 외부 인사를 학위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학위지도교수는 대학원생의 논문지도, 논문대체 활동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학생의 학술·연구활동과 학위청구논문 작성, 학위취득을 위한 활동을 지도한다.

제10장 보칙

제54조(준용규정) 학기·수업일수·휴업일 등에 관한 사항 및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희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55조(시행세칙의 제정)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6조(학칙 개정절차) 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장과 충분한 협의 후 학칙개정의 필요성, 개정내용, 시행예정일 및 개정에 따른 효과 등을 문서로 정리하여 일반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일반대학원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수합·정리하여 검토한 후, 개정안을 마련하여 기획조정처장에게 심의를 의뢰한다.

③ 기획조정처장은 의뢰된 학칙개정안에 대해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일반대학원장에게 송부한다.

④ 일반대학원장은 기획조정처장이 심의한 안을 대학원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은 후,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본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행정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평화복지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언론정보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산업정보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체육과학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국제법무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아태국제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동서의학 대학원학칙은 폐지된다.

제3조(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본 학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해당 대학원학칙을 적용한다.

제4조(동서의학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대학원에서 동서의학대학원으로 1999학년도 2학기에 편입된 학생에 한해 일반대학원에서 기 취득한 학점 전부를 동서의학대학원의 졸업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일반대학원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본 학칙 시행 이전의 평화복지대학원학칙을 적용 받은 수료자의 경우에는 당해 학칙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학년도 2학기까지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 경과조치는 1999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논문의 대필,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였던 자는 제외한다.

② 본 학칙의 학과는 2000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0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학생 중 희망자에 한하여 구 학칙의 학과를 적용 받을 수 있다.

③ 본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재학생이 본 학칙상의 학과로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 평화복지대학원장이 기 이수과목의 내용과 수강능력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동서의학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 개정학칙 제21조내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학년도 이전에 동서의학대학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한 학생에 대하여는 구학칙을 적용한다.

③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0학년도 1학기에 인류복지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타 학과로 전과를 희망할 경우 학칙 제12조에 의거 평화복지대학원장이 기 이수과목의 내용과 수강능력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본 학칙 제14조 제3항, 제21조 내지 제22조는 2002학년도 2학기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 ③ (NGO대학원에 관한 경과 조치) 본 학칙의 전공 및 학위명은 2002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본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재학생이 본 학칙상의 학위명을 수여 받기를 원할 경우 NGO대학원장은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의 경우 2001학년도 2학기에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본 학칙상의 전공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NGO대학원장은 기 이수과목과 수강능력 등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 ④ (일반대학원 무역학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별표1의 무역학과의 전공분야별 학위명칭은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한방재료가공학과에 대한 경과조치) 2003학년도 1학기까지는 농학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2003학년도 2학기부터 한방재료가공학과로 선발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건축·조경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2002학년도 2학기에 본 대학원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 당시에 일반대학원에서 기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 학칙에 의해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4학년도 1학기 이전에 국제 및 공공정책학과, NGO학과,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타 학과로 전과를 희망할 경우 학칙 제12조에 의거 평화복지대학원장이 이수과목의 내용과 수강능력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9월2일부터 시행한다.

②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4학년도 2학기 이전에 입학한자 중 학칙 제24조③항, 제25조②항과 관련하여 구 학칙을 적용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구평화복지대학원 내규 [별표1]의 이수학점 규정을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보통신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대학원은 폐지하되 재적생이 있는한 존치하는 것으로 본다.

③ (건축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된 학칙상의 대학원 명칭은 학칙개정일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조정 내용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아태국제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의 입학정원은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평화복지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1. 본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05학년도 1학기부터 2006학년도 1학기까지 구 학칙에 의해 선발되어 입학한 자가 신 학칙을 적용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평화복지대학원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2005학년도에 입학한 자의 경우 구 학칙에 따라 2006학년도 1학기에 개설되는 공통필수과목 중 평화복지대학원이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학칙 제15조(재입학·편입학 및 전과)와 관련하여 BK21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BK21사업 학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현재 재적생이 전원 졸업하는 시기에 폐원 예정이며, 정원은 2008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원으로 전환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정원조정 내용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평화복지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008학년도 9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학위기 문안 변경은 2009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폐지는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 일괄 적용한다.
- ③ (행정대학원 학위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대학원의 학위명 변경은 2009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④ (연계과정 학점의 중복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연계과정의 경우, 2009학년도 이전입학자에 한하여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과목 이수학점은 최대 9학점까지 학부졸업학점 및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국제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학위의 수여 및 종별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 국제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과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거한 복수학위 수여는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도 일괄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학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중 법학대학원과 관련된 변경, 추가 사항은 2011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1. 학칙 제14조(재입학·편입학 및 전과)와 관련하여 BK21⁺ 사업 학과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BK21⁺ 사업 학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 후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경영컨설팅학과의 폐과에 따라 경영컨설팅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재학중에 경영학과로 전과를 희망 할 경우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3. 본 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본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계약학과 관련 경과조치) 학칙 제3조 제4항에 규정한 계약학과와 관련된 사항은 본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1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2016학년도 1학기 이전에 퍼포밍아트학과 실용음악 전공으로 입학한 자가 2018년 3월 1일부로 재적중인 경우, 그 소속을 실용음악학과 실용음악전공으로 일괄 변경한다.

③ (동서의학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동서의학대학원 논문제출자격과 [별표2]의 동서의학대학원 과정, 학과 또는 전공, 학위종별(입학정원은 제외)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대학원 학과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전자·전파공학과와 폐지에 따라 전자·전파공학과로 입학한 자로서 2018년 3월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전자공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 ③ (국제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학위과정의 수료인정), 제24조(학기당 취득학점), [별표2]의 국제대학원 학과 또는 전공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동서의학대학원 학과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동서의과학과 한의과학전공의 폐지에 따라 동서의과학과 한의과학전공에 입학한 학생은 동서의학과 한의학전공으로 일괄 변경한다.
- ⑤ (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및 경과조치는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유급 및 복학 등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21년 2월 이후(2021년 2월 포함)에 졸업하는 자는 의과대학 의학과 동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 ⑥ (치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및 경과조치는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유급 및 복학 등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21년 2월 이후(2021년 2월 포함)에 졸업하는 자는 치과대학 치의학과 동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 ⑦ (경영대학원 전공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경영학과 경영컨설팅·서비스전공 폐지에 따라 경영학과 경영컨설팅·서비스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 경영컨설팅전공으로 변경한다.
- ⑧ (교육대학원 전공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2017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한 상업정보교육전공 및 디자인·도예교육전공 재적학생에 대해서도 변경된 전공을 일괄 적용한다.
- ⑨ (공공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3]의 공공대학원 학위종별은 학칙개정일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 제3항 제1호의 개정사항은 학칙개정일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 ③ (국제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 제24조, [별표2]의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 환경·지속가능개발 전공 관련 개정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④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종별은 2018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⑤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체육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 제2항 체육대학원 휴학기간 개정사항 및 제20조 제3항 체육대학원 수업연한 단축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제33조 체육대학원 외국어 시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체육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 제2항 체육대학원 휴학기간 개정사항 및 제20조 제3항 체육대학원 수업연한 단축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제33조 체육대학원 외국어 시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 ③ 제28조(학업평가) 제1항 학업평가기준을 따르는 대학원은 2020학년도 1학기 성적부터 적용되며,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에게도 적용한다.
- ④ (경영대학원 전공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경영학과 빅데이터경영전공 폐지에 따라 경영학과 빅데이터경영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 경영학과 AI비즈니스전공으로 변경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본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테크노경영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 1. 제24조 제2항의 10호는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2. 이 학칙 시행전에 산업정보대학원으로 입학한 자 중 재입학, 수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20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현재의 편제로 소속을 변경하며, 입학당시의 학위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졸업 해당학년도의 학위명을 수여한다.
- ③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종별은 2020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④ [별표1]의 일반대학원 융합생명의약학과 학과명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동서의학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1. 학칙 제14조(재입학·편입학 및 전과)와 관련하여 BK21 사업 학과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BK21 사업 학과 및 전공으로 전과 및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 후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본 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본항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언론정보대학원에 재적중인 자는 2021년 3월 1일부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언론정보대학원에 입학한 자로서 학적 변동 후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변경된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동서의학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의학영양학과 헬스케어영양학전공 신설 개정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경영대학원 학과 및 전공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콘텐츠비즈니스학과 폐지에 따라 콘텐츠비즈니스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 미디어&커머스 경영학과(소셜미디어 전공, e커머스전공)으로 변경한다. 문화예술경영학과 세부전공 폐지에도 불구하고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기존 소속전공을 유지하며,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문화예술경영학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 ④(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 엔터테이너, 크리에이터 전공 신설 개정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국제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학기당 취득학점) ②항 8호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③ (일반대학원 한약학과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한약학과 폐지에 따라 2022년 3월 한약학과 재적생(재학, 휴학)의 소속을 천연물융합신약개발학과로 변경하며, 한약학과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 천연물융합신약개발학과로 변경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체육대학원 스포츠빅데이터인먼트 전공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체육대학원 스포츠빅데이터인먼트 전공(석·박사과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 당시 전공을 유지한다.
- ③ (수료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3월 1일자 개정학칙 제23조(학위과정의 수료인정) 제6항 및 제33조(논문제출자격)제2호에 관하여 2008.09.01. 이전 입학한 수료생 중 평균평점 B-(2.7) 미만인 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료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대학원 선수학점 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2022년 9월 1일자 개정학칙 제25조(선수학점)제1항제1호에 관하여 특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선수학점 이수 의무 폐지 규정은 일반대학원 재적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 ③ (일반대학원 지리학과 학위종에 대한 경과조치) 지리학과 지리학박사 학위종 변경은 2023학년 이전 입학생도 졸업 이전인 경우 변경 신청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 (관광대학원 부동산학과 폐과에 대한 경과조치)
 - 1. 관광대학원 부동산학과 의 신입생 모집은 2023년 3월 1일 신입생까지는 관광대학원에서 모집한다.
 - 2. 관광대학원 부동산학과 재적생의 학적 이관은 2023년 9월 1일부로 한다.
 - 3. 2023년 9월 1일 이후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한다.
 - 4. 2023년 9월 이후 졸업하는 재적생은 경영대학원 내규의 졸업에 필요한 전공기초 과목을 추가 수강하여야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① 본 내규의 제 10장 종합시험의 폐지 및 제57조(학위수여 및 종별) 1항 6호의 변경에 따라 2023.10.1. 기준 본 대학원 재적생 중 2024.03.01. 이후 졸업하는 자는 종합시험을 면제하기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졸업연구를 수행하여 통과한 자에 한해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② 본 내규의 [별표1] 1. 테크노경영대학원 학과·전공·학위종별 및 입학정원에 의거 2024.03.01. 부로 복지경영학과가 심리상담경영학과로 변경함에 따라 2023.10.1. 기준 복지경영학과 재적생은 정해진 기간 중 소속변경 신청에 의거 심리상담경영학과로 변경할 수 있다.

부칙

본 내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논문심사위원 위촉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대학원위원회 심의는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석사학위 과정(서울C)				박사학위 및 석박통합 과정(서울C)				
계열	학과(석사)	학위종별	총괄 인원	계열	학과(박사)	학과(석박통합)	학위종별	총괄 인원
학·연·산 협·동·과·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학·연·산 협·동·과·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KT&G중앙연구원				KT&G중앙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부설 고등과학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서울C 석사 소계			578	서울C 박사 소계			363	

■ ■ 첨단분야 학과 결손인원 활용 정원(서울캠퍼스)

석사학위 과정(서울C)				박사학위 및 석박통합 과정(서울C)				
계열	학과(석사)	학위종별	총괄 인원	계열	학과(박사)	학과(석박통합)	학위종별	총괄 인원
의학	정밀의료학과(결손인원)	의학석사	10	-	-	-	-	-
서울C 석사 소계			10	서울C 박사 소계			0	

[별표 1] 일반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학과·학위종별 및 입학정원(국제캠퍼스)

석사학위 과정(국제C)				박사학위 및 석박통합 과정(국제C)				
계열	학과(석사)	학위종별	총괄 인원	계열	학과(박사)	학과(석박통합)	학위종별	총괄 인원
인문 사회 계열	영미어문학과 동양어문학과 -일본어문학전공 -중국어문학전공	문학석사 문학석사	368	인문 사회 계열	영미어문학과 동양어문학과 -일본어문학전공 -중국어문학전공	동양어문학과 -일본어문학전공 -중국어문학전공	문학박사 문학박사	147
	유럽어문학과 -프랑스어문학전공 -스페인어문학전공 -러시아어문학전공	문학석사			유럽어문학과 -프랑스어문학전공 -스페인어문학전공 -러시아어문학전공		문학박사	
	국제한국어문학과 국제학과	문학석사 국제학석사			국제한국어문학과 국제학과		문학박사 국제학박사	
자연 과학 계열	물리학과 -물리학전공 -프린티어융합전공	이학석사 이학석사	368	자연 과학 계열	물리학과 -물리학전공 -프린티어융합전공	물리학과 -물리학전공 -프린티어융합전공	이학박사 이학박사	147
	화학과	이학석사			화학과		이학석사	
	생명공학원 -한방신소재전공 -유전공학전공 -식품생명전공 -식품신소재전공 -식품생명공학전공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생명공학원 -한방신소재전공 -유전공학전공 -식품생명전공 -식품신소재전공 -식품생명공학전공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그린바이오과학원	농학/이학석사			그린바이오과학원	농학/이학박사		
	식품생명공학과	이학석사			식품생명공학과	이학박사		
	바이오의약생명공학과	이학석사			바이오의약생명공학과	이학박사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이학석사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이학박사		
	환경조경학과	조경학석사			환경조경학과	조경학박사		
	스마트팜과학과	이학석사			스마트팜과학과	이학박사		
	환경응용과학과 -환경학전공 -환경공학전공 -융합공학전공 -탄소중립에너지융합전공	이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환경응용과학과 -환경학전공 -환경공학전공 -융합공학전공 -탄소중립에너지융합전공	이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우주과학과	공학석사	우주과학과	공학박사					
우주탐사학과	이학석사	우주탐사학과	이학박사					
유전생명공학과	이학석사	유전생명공학과	이학박사					
공학 계열	기계공학과 -기계공학전공 -융합공학전공 -프린티어융합전공 -지능형에너지융합전공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368	공학 계열	기계공학과 -기계공학전공 -융합공학전공 -프린티어융합전공 -지능형에너지융합전공	기계공학과 -기계공학전공 -융합공학전공 -프린티어융합전공 -지능형에너지융합전공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147
	화학공학과 -화학공학전공 -융합공학전공	공학석사 공학석사			화학공학과 -화학공학전공 -융합공학전공	공학박사 공학박사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정보전자신소재공학전공 -프린티어융합전공	공학석사 공학석사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정보전자신소재공학전공 -프린티어융합전공	공학박사 공학박사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전공 -탄소중립에너지융합전공	공학석사 공학석사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전공 -탄소중립에너지융합전공	공학박사 공학박사		
	건축공학과 -건축공학전공 -탄소중립에너지융합전공	공학석사 공학석사			건축공학과 -건축공학전공 -탄소중립에너지융합전공	공학박사 공학박사		
	원자력공학과 -원자력공학전공 -지능형에너지융합전공	공학석사 공학석사			원자력공학과 -원자력공학전공 -지능형에너지융합전공	공학박사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융합보안전공	공학석사 공학석사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융합보안전공	공학박사 공학박사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전공 -탄소중립에너지융합전공 -지능형에너지융합전공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전공 -탄소중립에너지융합전공 -지능형에너지융합전공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전자공학과 -전자공학전공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	공학석사 공학석사			전자공학과 -전자공학전공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	공학박사 공학박사		
	생체의공학과	공학석사			생체의공학과	공학박사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공학석사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공학박사		
	인공지능학과	공학석사			인공지능학과	공학박사		
	반도체학과	공학석사			반도체학과	공학박사		
	메타버스학과	공학석사			메타버스학과	공학박사		

석사학위 과정(국제C)				박사학위 및 석박통합 과정(국제C)				
계열	학과(석사)	학위종별	총괄인원	계열	학과(박사)	학과(석박통합)	학위종별	총괄인원
에·체능 계열	체육학과	체육학석사	368	에·체능 계열	체육학과	건축학과	체육학박사	147
	도예학과	미술학석사			조형디자인학과		디자인학박사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학석사			텍스타일·패션디자인학과		디자인학박사	
	시각정보디자인학과	디자인학석사			건축학과		건축학박사	
	텍스타일·패션디자인학과	디자인학석사			디지털콘텐츠학과		미술학박사	
	건축학과	건축학석사			응용예술학과		예술학박사	
	디지털콘텐츠학과	미술학석사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음악학석사							
연극영화학과	연극영화학석사							
학과간 협동 과정	전자정보융합공학과 -전자공학전공 -생체의공학전공	공학석사 공학석사	368	학과간 협동 과정	전자정보융합공학과 -전자공학전공 -생체의공학전공	전자정보융합공학과 -전자공학전공 -생체의공학전공	공학박사 공학박사	147
	빅데이터응용학과	공학/이학/경영학석사			빅데이터응용학과	빅데이터응용학과	공학/이학/경영학박사	
학·연·산 협동 과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68	학·연·산 협동 과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7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신기술연구원				한국생신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KT&G중앙연구원				KT&G중앙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전문연구원				한국전문연구원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석사 소개			368	박사 소개			147	
일반대학원 석사 총계			946	일반대학원 박사 총계			510	

■ 첨단분야 학과 결손인원 활용 정원(국제캠퍼스)

석사학위 과정				박사학위 및 석박통합 과정				
계열	학과(석사)	학위 종별	총괄 인원	계열	학과(박사)	학과(석박통합)	학위 종별	총괄 인원
공학	메타버스학과(결손인원)	공학석사	8	공학	메타버스학과(결손인원)	메타버스학과(결손인원)	공학박사	4
공학	반도체학과(결손인원)	공학석사	13	공학	반도체학과(결손인원)	반도체학과(결손인원)	공학박사	3
국제C 석사 소개			21	국제C 박사 소개			7	
일반대학원 결손인원 활용정원 총계			31	일반대학원 결손인원 활용정원 총계			7	

[별표 2] 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학과·전공·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전문대학원	과정	학과 또는 전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동서의학대학원	석사학위	동서의학과	한의학전공	한의학석사	50명	
			의학전공	의학석사		
			대체보완의학전공	대체의학석사		
		융합건강과학과	융합건강과학전공	이학석사		
			노화외과학전공	외과학석사		
			노년학전공	노년학석사		
	의학영양학과	노인학과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	의과학석사, 노년학석사		
			의학영양학전공	의학영양학석사		
			임상영양학전공	의학영양학석사		
			헬스케어영양학전공	의학영양학석사		
	박사학위	동서의학과	한의학전공	한의학박사		20명
			의학전공	의학박사		
			대체보완의학전공	대체의학박사		
		융합건강과학과	융합건강과학전공	이학박사		
노화외과학전공			외과학박사			
노년학전공			노년학박사			
의학영양학과		노인학과	고령서비스-테크융합전공	의과학박사, 노년학박사		
			의학영양학전공	의학영양학박사		
국제대학원	석사학위	국제통상협력학과 - 국제통상협력학전공 - 한국개발경제 및 경제협력 전공 - 산업 및 무역정책 전공	국제통상협력학석사	42명		
			국제개발협력학과 - 국제개발협력학 전공 - 국제개발건설링 전공 - 탄소중립에너지융합전공		국제개발협력학석사	
					환경·지속가능개발 전공	환경·지속가능개발석사
					국제관계학과 - 국제관계학전공 - 동아시아학전공	국제관계학석사
		국제경영학과 - 국제경영전공 - 국제농식품경영전공 - 국제인적자원경영전공	국제경영학석사			
	박사학위		국제통상협력학과 - 국제통상협력학전공 - 한국경제학전공	국제통상협력학박사	10명	
		국제개발협력학과 - 국제개발협력학 전공 - 탄소중립에너지융합전공		국제개발협력학박사		
				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학박사
		국제경영학과	국제경영학박사			
		체육대학원	석사학위	스포츠의·과학 전공 글로벌스포츠산업·경영 전공 태권도학 전공		체육학석사
박사학위	스포츠의·과학 전공 글로벌스포츠산업·경영 전공 태권도학 전공		체육학박사	20명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의학과	의무석사	0명 ¹⁾		
	박사학위	의학과	외과학박사			
치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치위학과	치의학석사	0명 ²⁾		
	박사학위	치위학과	치외과학박사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법학	법학전문석사	60명		
	박사학위	법학	법학박사	10명		
석사학위과정				187명		
박사학위과정				60명		
총 인원				247명		

- 1)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제 전환에 따른 신규모집 제한
- 2) 치의학전문대학원의 학제 전환에 따른 신규모집 제한

[별표 3]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학과·전공·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특수대학원	과정	학 과	전 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경영대학원	석사	경영학과	전략경영, 국제경영, 경영컨설팅, 코칭사이언스, 시비즈니스, 아시아경영, 브랜드매니지먼트, 스타트업비즈니스, 서비스경영	경영학 석사	985명
		세무관리·회계학과		경영학 석사	
		미디어&커머스 경영학과	메타서비스비즈니스, e커머스		
		융합경영학과	기술경영, 6차산업융합경영	의료경영학석사	
		의료경영학과		예술경영학석사	
		문화예술경영학과		경영학 석사	
		EMBA 학과		부동산경영학 석사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	서울 캠퍼스	교육정책및리더십,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유아교육, 일반사회교육, 역사교육, 국어교육, 영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수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보건교육, 상업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상담심리, 박물관·미술관교육, 영양교육, 교사리더십, 혁신교육	교육학석사
			국제 캠퍼스	중국어교육, 디자인교육, 체육교육, 교사리더십, 영어교육, 수학교육, 평생교육, 실용음악교육, 유아교육, 상담심리, 혁신교육	교육학석사
공공대학원	석사	정책학과	공공정책	행정학석사	
		의료관리학과	간호행정, 병원행정	의료행정학석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노인·케어복지	사회복지학석사	
		시민사회·NGO학과	시민사회·NGO	시민사회(NGO)학석사	
		글로벌거버넌스학과	글로벌거버넌스	국제개발학석사	
평화복지대학원	석사	국제평화·거버넌스학과	국제평화	평화학석사	
			평화안보정책	정치학석사	
		유엔평화학과	유엔평화	평화학석사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	경영학석사	
		건설안전경영학과	건설안전경영	공학석사	
		스포츠경영학과	스포츠경영	체육학석사	
		복지경영학과	복지경영	경영학석사	
		디지털융합학과	디지털융합	공학석사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	저널리즘학과	신문잡지, 방송	언론학석사	
		전략커뮤니케이션학과	광고, 홍보, 스피치토론, 정치커뮤니케이션		
		문화콘텐츠학과	출판저작권, 대중예술, 디지털영상		
		디지털미디어플랫폼학과	디지털미디어플랫폼산업		
법무대학원	석사	기업법학과	기업법, 자산관리법, 지적재산법	법학석사	
		공공법학과	입법, 공법, 경찰·안전법		
		중국법학과	중국법		
		건설법학과	건설법		
		조세법학과	조세법, 관세법		
관광대학원	석사	호텔경영학과		관광학석사	
		관광학과			
		컨벤션전시경영학과			
		조리외식경영학과			
		와인·소믈리에학과			
		문화관광엔터테인먼트학과			
		글로벌문화관광경영학과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	실용음악	음악학석사	
		문화예술콘텐츠학과	문화예술콘텐츠	예술학석사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	엔터테이너, 크리에이터	예술학석사	
간호대학원	석사	간호학과	노인전문간호사전공	간호학석사	
			정신전문간호사전공		
			임상간호전문가전공		
계					985명

시행 : 2023. 09.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

제2조(전형방법) 입학전형방법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제3조(외국인 전형) 학칙 제1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면접 없이 서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4조(입학전형 지원구비서류 등)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입학전형지원자의 구비서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원서(원서용 사진 포함)
2. 학업(연구)계획서(소정양식)
3. 학위수여(예정)증명서(학위등록번호 기재)
4. 하위 학위과정의 성적증명서(평균평점 및 백분율 성적 기재). 다만, 영어권 이외의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작품포트폴리오 등 학과에서 정하는 자료(예· 체능계열에 한함)
6. 기타 해당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또는 자료

제5조(협동과정 입학전형 지원 구비서류) 학·연·산 협동과정 입학 지원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외에 관련 협동기관 학·연·산 운영 책임자의 추천서 및 소속기관장명의로의 진학동의서(해당자)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학전형위원) 입학전형위원의 구성과 운영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제7조(입학정원배분) 각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며, 교육부 등 정부나 본교의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는 학과나 교수에게는 별도의 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

제3장 수업 및 등록

제8조(타 대학원 과목이수) ① 특수대학원 재학생은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타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재학생은 학위지도교수와 양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상호학점교류를 할 수 있다.

③ 일반대학원 법학과 재학생은 양 대학원 학과장과 양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 이내에서 법무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제9조(선수학점 이수) ① 일반대학원에 비동일계로 입학한 경우 학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규 교과학점 이외에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12학점 이상을 하위 학위과정에서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 특수대학원 졸업생으로서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동일계의 경우 6학점 이상, 비동일계의 경우 12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소정의 학점 인정서에 학위지도교수와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선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④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선수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따로 정한다.

⑤ 선수학점은 수강신청학점, 졸업이수학점 및 평균평점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제10조(타 대학교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본교 대학원 재학생이 본교와 상호 학점 교류 대상인 국내외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소속 대학원의 학위지도교수, 학과장(또는 주임교수),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등록은 소속 대학원에 하여야 한다.

제11조(입학전 이수학점 인정) ① 각 대학원 입학 전에 국내외 타 대학원의 동등 학위과정에서 소속 대학원 교과목에 포함되는 과목을 이수한 학점은 소정양식의 학점 인정서에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신청할 경우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 이내에서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편입학생 학점인정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② 본교의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본교의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 B학점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초과분에 한하여 제1항의 절차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각 대학원의 연구과정 등 비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취득한 학점의 2/3 이내에서 동일 학위과정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대학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학대학원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⑤ 국제대학원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 및 정정은 정해진 기간 내에 교내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입력·신청하여야 한다.

② 최종 수강신청 내역은 본인이 교내 전산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강신청 과목의 정정은 해당 부서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정정 및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성적정정) 성적이 누락되거나 오기 되었을 경우, 담당교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정정할 수 있다.

제14조(수업연한이후 등록) 대학원의 수업연한 이후 등록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연구등록) ①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료생은 학위 취득시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예약입학제 및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3학기 내에 석사과정 수료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4학기부터 수료생으로서 연구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③ 통합과정의 학생이 6학기 내에 박사과정 수료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7학기부터 수료생으로서 연구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④ 연구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4장 학적변동

제16조(휴학) ① 휴학사유발생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휴학을 할 수 있다.

② 휴학은 매학기 소정의 휴학신청기간에 하여야 한다.

③ 휴학자의 등록금은 휴학일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하여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 및 대체 등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17조(복학) 복학을 하려는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학기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퇴원을 일반대학원은 학위지도교수 및 학과장,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부대학원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재입학) 재입학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 신청은 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등의 사유로 재입학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재입학할 수 없다.

제5장 학위청구논문 및 학위수여

제20조(학위지도교수)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학위지도교수는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②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 통합 및 박사 과정의 경우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학위지도교수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공동지도교수, 학과간협동과정, 학·연·산 협동과정인 경우에는 각 대학원 내규에 따른다.

제21조(논문지도학점) 논문지도학점에 관한 사항을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 정한다.

제22조(학위자격 시험) ① 일반대학원에 학위청구논문 제출 또는 논문대체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학위자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일반대학원 학위자격시험은 학과별로 교육과정시행세칙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학위자격시험은 학과에서 정하는 필기 또는 구술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④ 학위자격시험의 평가는 급제(P) 또는 낙제(N)로 한다.

⑤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위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23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24조(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및 시기)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 제출 승인서(소정양식)

2. 심사용 논문(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은 학기별로 하며, 제출시기는 해당 부서장이 정한다.

제25조(논문심사의 결정)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의 합격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2/3이상,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4/5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심사의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학위수여 결정) 해당 부서장은 논문심사(논문대체 심사)와 학위자격시험 결과를 접수한 후 대학 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학위표기 및 수여) ① 학위증서, 학적부 및 그 밖에 대학에서 발행하는 학위증명 관련 문서에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표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학술학위를 표기하는 경우 학칙에서 정한 해당 학위명 표기
 2. 전문학위를 표기하는 경우 학칙에서 정한 해당 학위명 다음에 괄호를 한 후 전문분야 표기
- ② 석사 및 박사학위 수여는 별지 서식 제1호 내지 제4호 중 해당되는 학위기를 수여함으로써 행한다.
- ③ 각 대학원은 해당 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지 서식 제5호의 학위기를 수여할 수 있다.

제28조(학위논문 제출)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학위취득예정자는 즉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학위논문을 책자로 제본하여 본교 중앙도서관장에게 소정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연구윤리) ① 연구 관련자(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학위지도교수,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등)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학위청구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그 작성과정 등이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학위 취소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연구생

제30조(지원자격 및 전형) ① 연구생의 지원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② 연구생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 ③ 연구생의 입학지원 서류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31조(수업연한 및 이수학점) ① 연구생의 수업연한은 6개월 이상으로 한다.

- ②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 연구생의 이수학점은 학기당 석사학위과정 연구생은 9학점 이내, 박사학위과정 연구생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제32조(연구실적증명서 등) ① 석사학위과정 연구생이 9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 연구생이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는 연구실적증명서 또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연구생 제적) 연구생이 자격미달 또는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로 물의를 야기할 경우 해당 부서장은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학칙시행세칙·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학칙시행세칙·경희대학교행정대학원학칙시행세칙·경희대학교언론정보대학원학칙시행세칙·경희대학교산업정보대학원학칙시행세칙 및 경희대학교국제법무대학원학칙시행세칙은 폐지된다.
- ③ (경과조치) 부칙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해당 대학원학칙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학석사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대학원장 ○○○ _____

위 증명에 의하여 ○○학석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경희대학교 총장 ○○○ _____

학위등록번호 : 경희대○○○○(석)○○○○

제○○○○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학박사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논문제목 :

○○○대학원장 ○○○ _____

위 증명에 의하여 ○○학박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경희대학교 총장 ○○○ _____

학위등록번호 : 경희대○○○○(박)○○○○

제○○○○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학석사(○○전공)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대학원장 ○○○ _____

위 증명에 의하여 ○○학석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경희대학교 총장 ○○○ _____

학위등록번호 : 경희대○○○○(석)○○○○

제○○○○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학박사(○○전공)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논문제목 :

○○○대학원장 ○○○ _____

위 증명에 의하여 ○○학박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경희대학교 총장 ○○○ _____

학위등록번호 : 경희대○○○○(박)○○○○

NO.○○○○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of the
[영 문 대 학 원 명] ,
Kyung Hee University has conferred upon

[영문 성명]

the degree of

[영문 학위명]
in [영문학과(전공)명]

with all the rights, honors, and privileges
thereto pertaining given in Korea
this ○○ day of ○○, in the year ○○○○.

○ ○ ○
Dean of the [영문대학원명]

○ ○ ○
President of the University